

[목 차]

● 가입자 유의사항	3
● 주요내용 요약서	4
● 보험용어 해설	6
● 무배당 모아변액연금보험 (적립형) 약관	7
● 표준하체인수특약 약관	43
● 지정대리청구서비스특약 약관	49
● (별지) 약관 내 인용 조문	55

<<가입자 유의사항>>

□ 보험계약관련 특히 유의할 사항

1. 보험계약관련 유의사항

○ 보험계약전 알릴의무 위반

- 과거 질병 치료사실 등을 회사에 알리지 않을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과거 질병 치료사실 등은 보험설계사등에게 말로써 알린 경우는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므로, 반드시 청약서에 서면으로 알리시기 바랍니다.
- 전화 등 통신수단을 통해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서면질의서 없이 안내원의 질문에 답하고 이를 녹음하는 방식으로 계약전 알릴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므로 답변에 특히 신중하여야 합니다.

○ 이 상품은 실적배당형 변액보험으로 연금지급개시전에는 사망보험금 및 해지환급금 등이 특별계정의 운용실적에 따라 변동하며, 해지환급금은 최저보증되지 않으며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 최초 보험료를 납입한 날로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까지의 기간이 10년 이상인 보험계약에서 발생한 보험차익(만기보험금 또는 해지환급금에서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차감한 금액)에 대해서는 이자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다만, 최초납입일로부터 10년이 되기 전에 납입한 보험료를 확정된 기간동안 연금형태로 나누어 지급받는 경우는 과세됩니다.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2. 해지환급금 관련 유의사항

○ 보험계약을 중도해지시 해지환급금은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납입한 보험료 중 위험보장을 위한 보험료, 사업비 및 특약보험료를 차감한 후 운용-적립되고, 해지시에는 적립금에서 이미 지출한 사업비해당액을 차감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 보험금 지급관련 특히 유의할 사항

○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보험 보장에 사용되는 보험료(위험보험료)와 보험계약 체결-유지비용(사업비)을 제외한 금액이 펀드에 투자되어 운영됩니다.

○ 연금지급개시후에는 펀드 운용실적이 반영되지 않으며, 연금지급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금을 기준으로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연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연금지급개시전에 연금지급형태를 실적연금형으로 변경한 경우에는 계약자적립금은 특별계정의 운용실적을 반영합니다.

○ 연금지급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금은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최저보증합니다.

○ 사망보험금은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최저보증합니다.

○ 연금지급형태가 종신연금형인 경우 연금지급개시후에는 해지할 수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서>>

1. 자필서명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장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전화를 이용하여 가입할 때 일정요건이 충족되면 자필서명을 생략할 수 있으며,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몰에서는 전자서명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2. 계약전 알릴의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청약서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기재하고 자필서명을 하셔야 합니다. 특히, 보험설계사에게 말로서 알린 사항은 효력이 없으며, 전화 등 통신수단을 통해 가입하는 경우에는 서면을 통한 질문절차 없이 안내원의 질문에 답하고 이를 녹음하는 방식으로 계약전 알릴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므로 답변에 신중하여야 합니다. 만약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사항이란, 보험회사가 이를 알았더라면 보험계약의 체결을 거절하였거나, 적어도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리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사항을 말합니다.

3. 계약의 무효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계약을 무효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 타인의 사망을 보장하는 계약에서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서면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
- 만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를 피보험자(보험대상자)로 하여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한 계약의 경우
- 계약체결시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우

4. 청약철회

보험계약자는 청약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진단계약, 단체(취급)계약 또는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통신판매 계약의 경우에는 청약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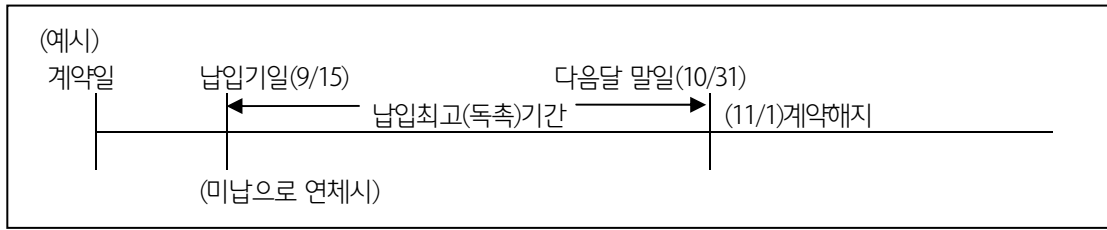
5. 계약취소

계약 청약시 약관과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청약서 부분)를 전달받지 못하였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받지 못한 때 또는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자는 청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소정의 이자를 더하여 지급합니다.

6. 보험료의 납입연체 및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보험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는 경우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납입최고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합니다)으로 정하여 보험료의 납입을 최고(독촉)하고, 그 때까지 해당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계약이 해지됩니다.

※다만, 당사의 납입최고(독촉)기간은 아래와 같이 납입기일 다음날부터 납입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로 합니다.



7. 계약의 소멸

이 보험계약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 그 때 부터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8.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

보험료 납입연체로 보험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 보험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2년 이 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보험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 자(보험대상자)의 건강상태, 직업, 직종 등에 따라 승낙여부를 결정하며,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부활(효력회 복)을 거절하거나 보장의 일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보험용어 해설>>

- **보험약관**
생명보험계약에 관하여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 상호간에 이행하여야 할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 것
-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
보험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드리는 증서
- **보험계약자**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 납입의무를 지는 사람
-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보험사고 발생의 대상이 되는 사람
※ 보험사고란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되는 사항으로, 자세한 사항은 <별표 1> 보험금 지급기준표 참고
-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금 청구권을 갖는 사람
- **보험료**
보험계약에 따른 보장을 받기 위하여 보험계약자가 보험회사에 납입하는 금액
- **보험금**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사망, 장애, 입원, 만기 등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보험회사가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지급하는 금액
- **보험기간**
보험계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
- **보장개시일**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의무가 시작되는 날
- **보험가입금액**
보험금,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등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금액
※ 보험가입금액, 보험료 납입기간,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나이 등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출하지 아니하고 보험계약자가 보험료를 선택하는 보험에서는 보험료 수준에 따라 보험금, 준비금(적립액) 등이 결정됨
- **책임준비금**
장래의 보험금, 해지환급금 등의 지급을 위하여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정액을 보험회사가 적립해 둔 금액
- **해지환급금**
계약의 효력상실 또는 해지시 보험계약자에게 돌려주는 금액

무배당

모아변액연금보험 (적립형) 약관

무배당 모아변액연금보험(적립형) 약관

제1관 보험계약의 성립 및 유지	11
제 1조 【보험계약의 성립】	
제 2조 【청약의 철회】	
제 3조 【계약의 체결 및 보험료】	
제 4조 【용어의 정의】	
제 5조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범위 및 자격의 득실】	
제 6조 【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제 7조 【계약의 무효】	
제 8조 【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 9조 【계약자의 임의해지 및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서면동의 철회권】	
제10조 【계약의 소멸】	
제11조 【보험나이】	
제2관 보험료의 납입 (계약자의 주된 의무)	16
제12조 【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일】	
제13조 【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	
제14조 【납입된 보험료의 처리】	
제15조 【보험료납입 일시중지제도】	
제16조 【보험료 납입중지】	
제17조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	
제18조 【보험료의 납입연체 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제19조 【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	
제3관 보험금의 지급 (회사의 주된 의무)	20
제20조 【강제집행 등으로 인한 해지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제21조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22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23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제24조 【공시이율의 적용 및 공시】	
제25조 【해지환급금】	
제26조 【배당금의 지급】	
제27조 【소멸시효】	
제4관 특별계정에 관한 사항	23
제28조 【계약자적립금의 계산】	
제29조 【펀드의 운용 및 평가】	
제30조 【펀드의 유형】	

- 제31조 【계약자의 펀드자동재배분 선택】
- 제32조 【계약자의 펀드 선택 및 변경】
- 제33조 【자산의 평가방법 및 운용】
- 제34조 【특별계정 좌수 및 기준가격】
- 제35조 【특별계정의 제비용 및 보수에 관한 사항】
- 제36조 【계약자 공지에 관한 사항】
- 제37조 【특별계정의 폐지】

제5관 보험계약시 계약자의 계약전 알릴의무 등 27

- 제38조 【계약전 알릴의무】
- 제39조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의 효과】
- 제40조 【중대사유로 인한 해지】
- 제41조 【사기에 의한 계약】

제6관 보험금 지급 등의 절차 28

- 제42조 【주소변경 통지】
- 제43조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지정】
- 제44조 【대표자의 지정】
- 제45조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통지】
- 제46조 【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
- 제47조 【보험금 등의 지급】
- 제48조 【보험금 받는 방법의 변경】
- 제49조 【계약내용의 교환】
- 제50조 【계약자적립금의 인출】
- 제51조 【보험계약대출】

제7관 분쟁조정 등 32

- 제52조 【분쟁의 조정】
- 제53조 【관할법원】
- 제54조 【약관의 해석】
- 제55조 【회사가 제작한 보험안내자료 등의 효력】
- 제56조 【보험계약의 변동사항 통지】
- 제57조 【결산사항의 통지】
- 제58조 【회사의 손해배상책임】
- 제59조 【회사의 파산선고와 해지】
- 제60조 【준거법】
- 제61조 【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무배당 모아변액연금보험(적립형) 약관

제1관 보험계약의 성립 및 유지

제1조 【보험계약의 성립】

- ①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의 청약과 보험회사의 승낙으로 이루어집니다. (이하 보험계약은 "계약", 보험계약자는 "계약자", 보험회사는 "회사"라 합니다. 또한 가입 시부터 연금지급개시나이 계약해당일의 전일까지를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연금지급개시나이 계약해당일부터 종신까지를 "연금개시후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 ②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계약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승낙을 거절하거나 별도의 조건(보험가입금액 제한, 일부 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 등)을 부과하여 인수할 수 있습니다.
- ③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받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하는 계약(이하 "무진단계약"이라 합니다)은 청약일, 건강진단을 받는 계약(이하 "진단계약"이라 합니다)은 진단일(재진단의 경우에는 최종 진단일)부터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하여야 하며, 승낙한 때에는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을 드립니다. 그러나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가 없으면 승낙된 것으로 봅니다.
- ④ 회사가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승낙을 거절한 경우에는 거절통지와 함께 받은 금액을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이 계약의 보장계약 예정이율(이하 "예정이율"이라 합니다)+1%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회사는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승낙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의 매출을 취소하며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예정이율】

생명보험의 보험료 산출에 사용되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보험료를 납입하는 시점과 보험금 지급사이에는 시차가 발생하므로 생명보험회사에서는 이 기간동안 기대되는 자산운용수익을 미리 예상하여 일정한 비율로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데, 이 할인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예정이율을 높게 잡으면 보험료는 상대적으로 싸게 되며, 반대의 경우는 비싸게 됩니다.

제2조 【청약의 철회】

- ① 계약자는 청약을 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撤回)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진단계약, 단체(취급)계약 또는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전화·우편·컴퓨터 등의 통신매체를 통한 보험계약(이하 "통신판매 계약"이라 합니다)의 경우에는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 ② 계약자가 청약을 철회한 때에는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리며, 보험료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하여는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이하 "보험계약대출이율"이라 합니다)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청약을 철회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신용카드의 매출을 취소하며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③ 청약을 철회할 당시에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으나 계약자가 그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청약철회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제3조 【계약의 체결 및 보험료】

- ① 계약자는 다음에 정하는 보장계약과 연금계약을 동시에 체결하여야 합니다. (이하 "보장계약"과 "연금계약"을 합하여 "계약"이라 합니다)
 1. 보장계약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망하였을 때 사망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한 계약
 2. 연금계약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살아있을 때 연금을 지급받기 위한 계약
- ② 계약자는 제1항에서 정하는 보장계약의 보험료와 연금계약의 보험료를 합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이하 "보장

계약의 보험료"와 "연금계약의 보험료"를 합하여 "보험료"라 합니다)

③ 보험료는 다음에 정하는 기본보험료와 추가납입보험료로 구성됩니다.

1. 기본보험료

계약자가 계약시점에 보험료 납입기간 중 매일 계속 납입하기로 한 월납보험료를 말합니다.

2. 추가납입보험료

계약자가 계약일 이후 1개월이 지난 후부터 「연금지급개시 나이 - 5세(다만, 3년납의 경우 「연금지급개시 나이 - 7세) 연계약해당일까지 기본보험료 납입주기와 달리 수시로 납입할 수 있는 보험료를 말합니다. 다만, 추가납입보험료는 이 보험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하는 한도 내에서 납입이 가능합니다. 이 계약에서 '연 계약해당일'이라 함은 계약일부터 1년씩 경과되는 매년의 계약해당일을 말합니다. 다만, 해당 연도의 계약 해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월의 말일을 계약해당일로 합니다.

④ 제1항 제2호의 연금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시 종신연금형으로 정해지며, 계약자는 연금지급개시일 전일까지 연단위 보험계약해당일로 연금지급개시시점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구분	내용		
	연금지급형태	기간보장부 종신연금형	정액형
(개인연금형, 부부연금형)		체증형(5%, 10%)	10년 보증, 20년 보증
금액보장부 종신연금형			

제4조 [용어의 정의]

이 계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변액보험"이라 함은 회사에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의 일부로 자금을 조성하여 특별계정으로 운영하고, 그 특별계정의 운용실적에 따라 계약자에게 투자이익을 배분함으로써 보험기간 중에 보험금액 등이 변동하는 보험을 말합니다.
- "일반계정"이라 함은 보험업법 제108조(특별계정의 설정·운용) 제1항 각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계약을 제외한 계약에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를 회계처리하기 위한 계정으로 회사는 제3호의 특별계정과 구분하여 재산을 관리하고 회계처리 합니다.

[설명] 일반계정이란?

- 특별계정 외에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를 회계처리하기 위한 계정을 말합니다.
- 생명보험상품 대부분을 차지하는 관리계정으로 퇴직보험, 연금저축, 변액보험처럼 관련 법령으로 특별계정을 설치하여 운용하도록 한 상품을 제외한 것입니다.

- "특별계정"이라 함은 보험업법 제108조(특별계정의 설정·운용) 제1항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준비금에 상당하는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타 재산과 구별하여 이용하기 위한 계정을 말하며, 이 보험의 연금개시전 보험기간과 제8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5항에 의해 연금지급형태 변경시 실적연금형을 선택한 경우 연금개시후 보험기간의 실적연금형에 한하여 운용됩니다.

[설명] 특별계정이란?

- 계약자적립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타 재산과 구별하여 운용하기 위한 계정을 말합니다.
- 보험상품의 도입목적, 상품운용방법 등이 일반상품과 크게 상이하여 보험회사로 하여금 다른 보험상품과 구분하여 별도로 관리 및 운용을 할 것을 보험관련 법규에서 지정한 것으로 계정 상호간 계약자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정한 것입니다. 주요 특별계정 상품으로는 퇴직보험, 연금저축, 변액보험 등이 있습니다.

- "펀드"라 함은 계약자가 선택한 특별계정자산을 말합니다.
- "계약자적립금"이라 함은 특별계정의 운용실적에 따라 개별 계약자 별로 배분된 금액 등을 말하며 특별계정의 평가 등에 의하여 매일 변동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계약대출이 있는 경우 제51조(보험계약대출) 제4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험계약대출금액의 부리 적립액(이하 "보험계약대출적립금"이라 합니다)을 포함합니다.

【설명】

변액보험은 각 펀드별로 매일의 펀드 운용결과를 반영하여 매일의 기준가격이 변동하기 때문에, 펀드에 투입되는 금액이 동일한 경우라도 그 처리기준일의 기준가격에 따라 매입 좌수에 차이가 있으므로 수익률이 다를 수 있습니다.

6. "이미 납입한 보험료"라 함은 계약자가 회사에 납입한 기본보험료 및 추가납입보험료를 말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납입보험료를 감액하거나 중도에 계약자적립금을 인출할 경우 동조 제7호 및 제9호, 제2조(청약의 철회) 제2항, 제6조(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제4항, 제7조(계약의 무효), 제8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5항, 제2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2항 및 제3항에서 정하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제8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4항 및 제50조(계약자적립금의 인출) 제3항에 따라 계산된 보험료와 해당 감액 또는 중도인출 이후 납입된 보험료의 합계를 말합니다.
7. "최저사망보험금"이라 함은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동안 특별계정의 운용실적과는 관계없이 보장하는 최저한도의 사망보험금으로서 사망시점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말합니다.
8. "최저사망보험금 보증비용"이라 함은 특별계정에 의하여 운용된 투자실적과 관계없이 최저사망보험금의 지급을 보증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말합니다.
9. "최저연금적립금"이라 함은 특별계정의 운용실적과는 관계없이 보장하는 연금개시시점의 최저한도의 계약자적립금으로서 연금지급개시시점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말합니다. 다만, 최저연금적립금은 연금을 수령하는 계약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10. "최저연금적립금 보증비용"이라 함은 특별계정에 의하여 운용된 투자실적과 관계없이 최저연금적립금을 보증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말합니다.
11. "특별계정 운용보수"라 함은 특별계정에 속한 재산의 자산운용관리 등에 소요되는 수수료를 말합니다.
12. "특별계정 수탁보수"라 함은 특별계정에 속한 재산의 보관·기준가격산정업무 등에 소요되는 수수료를 말합니다.

제5조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범위 및 자격의 득실】

- ① 이 계약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연금개시전 보험기간과 연금개시후 보험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습니다.
 1. 연금개시전 보험기간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본인으로 합니다.
 2. 연금개시후 보험기간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개인연금형의 경우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본인으로 하고, 부부연금형의 경우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본인(이하 "주피보험자(주된 보험대상자)"라 합니다)과 주피보험자(주된 보험대상자)의 가족관계등록부상 또는 주민등록상의 배우자(이하 "종피보험자(확장 보험대상자)"라 합니다)로 합니다. (이하 "주피보험자(주된 보험대상자)"와 "종피보험자(확장 보험대상자)"를 합하여 "피보험자(보험대상자)"라 합니다)
- ② 부부연금형의 경우 연금지급개시후 종피보험자(확장 보험대상자)가 사망이외의 원인(이혼 등)으로 제1항 제2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면 종피보험자(확장 보험대상자)의 자격을 더 이상 가지지 아니합니다.
- ③ 부부연금형의 경우 연금지급개시 후 새로이 제1항 제2호에 해당되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그 해당된 날로부터 종피보험자(확장 보험대상자)의 자격을 취득합니다. 그러나 연금지급개시후 종피보험자(확장 보험대상자)가 사망한 후 새로이 제1항 제2호에 해당되는 자는 종피보험자(확장 보험대상자)의 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합니다.

제6조 【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 ① 회사는 계약자가 청약한 경우 계약자에게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청약서 부분)를 드리고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드립니다. 다만, 통신판매 계약은 계약자가 동의하는 경우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청약서 부분) 등을 광기록매체 및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법으로 송부하고 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청약서 부분) 등을 수신하였을 때에는 당해 문서를 드린 것으로 보며, 약관의 중요내용에 대하여 계약자가 사이버몰(컴퓨터를 이용하여 보험거래를 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에서 확인한 때에는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또한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회사는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청약내용, 보험료 납입, 보험기간, 계약전 알릴 의무, 약관의 중요한 내용 등 보험계약 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질문 또는 설명하고 그에 대한 계약자의 답변, 확인내용을 음성 녹음함으로써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합니다.

- ② 회사가 제1항에 의해 제공될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청약서 부분)를 청약시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아니하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아니한 때 또는 계약체결시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날인(도장을 찍음) 및 전자서명법 제2조(정의)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공인인증기관이 인증한 전자서명을 포함합니다)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자는 청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체(취급)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③ 제 2항에도 불구하고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1을 충족하는 때에는 자필서명을 생략할 수 있으며,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음성녹음 내용을 문서화한 확인서를 계약자에게 드림으로써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청약서 부분)를 전달한 것으로 봅니다.
 - 1.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및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동일한 계약의 경우
 - 2.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동일하고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법정상속인인 계약일 경우
- ④ 제 2항에 따라 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회사는 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계약자적립금의 인출이 있었던 때에는 이를 차감한 금액)를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대출 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p>【조문 내용】</p> <p>전자서명법 제2조(정의)</p> <p>10. "공인인증기관"이라 함은 공인인증역을 제공하기 위하여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자를 말한다.</p> <p>전자서명법 제4조(공인인증기관의 지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공인인증업무(이하 "인증업무"라 한다)를 안전하고 신뢰성있게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공인인증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01.12.31, 2008.2.29> ② 공인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법인에 한한다. ③ 공인인증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술능력·재정능력·시설 및 장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갖추어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공인인증기관을 지정하는 경우 공인인증시장의 건전한 발전 등을 위하여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비영리법인과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에 대하여는 설립목적에 따라 인증업무의 영역을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신설 2005.12.30, 2008.2.29> ⑤ 공인인증기관의 지정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05.12.30>

제7조 【계약의 무효】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계약자적립금의 인출이 있었던 때에는 이를 차감한 금액)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 1.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체결시까지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 다만, 단체가 규약에 따라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보험대상자)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 2. 만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를 피보험자(보험대상 자)로 하여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한 계약의 경우
- 3. 계약체결시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우. 다만, 회사가 나이의 착오를 발견하였을 때 이미 계약나이에 도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나 제2호의 만15세 미만자에 관한 예외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심신상실자 및 심신박약자의 설명】

심신상실자(心神喪失者) 또는 심신박약자(心神弱者)라 함은 정신병, 정신박약, 심한 의식장애 등의 심신 장애로 인하여 사물 변별 능력 또는 의사 결정 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자를 말합니다.

제8조 【계약내용의 변경 등】

①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1. 기본보험료
2. 보험료의 납입기간 및 수금방법
3. 연금지급형태, 연금지급형태의 구성비율 및 연금지급개시나이
4. 계약자
5. 기타 계약의 내용

② 계약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회사의 승낙을 요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를 변경하는 경우 회사에 통지하지 아니하면 변경후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는 그 권리로서 회사에 대항하지 못합니다.

③ 회사는 계약자가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기본보험료를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해지된 것으로 보며, 이로 인하여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지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25조(해지환급금) 제2항에 의한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④ 제3항에 따라 기본보험료를 감액한 경우 동조 제5항, 제2조(청약의 철회) 제2항, 제4조(용어의 정의) 제7호 및 제9호, 제6조(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제4항, 제7조(계약의 무효), 제2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2항 및 제3항에서 정하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 감액후 「이미 납입한 보험료」

$$= \text{감액 직전 「이미 납입한 보험료」} \times \frac{\text{감액후 계약자적립금}}{\text{감액전 계약자적립금}}$$

(※ 「감액 직전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해당 감액 전 중도인출 및 감액이 발생한 경우에 제50조(계약자적립금의 인출) 제3항 및 상기 방법에 따라 계산된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말합니다.)

⑤ 계약자는 제1항 제3호의 연금지급형태, 연금지급형태의 구성비율 및 연금지급개시나이를 연금지급개시 전에 다음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료 납입이 완료된 후부터 연금지급 개시까지 최소 5년(다만, 3년납의 경우 7년)의 거치기간을 두어야 하며, 변경 당시 계약자적립금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을 경우에는 연금지급개시나이를 단축할 수 없습니다.

1. 연금지급형태

구분	내용		
연금지급 형태	기간보증부 종신연금형 (개인연금형, 부부연금형)	정액형	10년 보증, 20년 보증, 100세 보증
		체증형(5%, 10%)	10년 보증, 20년 보증
	금액보증부 종신연금형		
	확정연금형 (5년, 7년, 10년, 15년, 20년)		
	상속연금형		
실적연금형(5년 이상 계약자가 선택한 연단위 기간)			

2.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 기간보증부 종신연금형, 금액보증부 종신연금형, 상속연금형: 연금지급개시나이 계약해당일부터 종신까지
- 확정연금형, 실적배당형: 연금지급개시나이 계약해당일부터 최종 연금 지급일까지

⑥ 계약자가 제2항에 의하여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⑦ 제1항 내지 제5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는 보험료납입 일시중지기간(보험료납입기간 중 제15조(보험료납입 일시중지제도)에 의해 기본보험료를 납입하지 않기로 한 기간으로 (이하 ‘보험료납입 일시중지기간’이라 합니다))

중에는 제1항 제1호의 기본보험료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제9조 【계약자의 임의해지 및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서면동의 철회권】

- ① 계약자는 연금지급개시 이전에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제25조(해지환급금) 제2항에 의한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제8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5항에 의해 연금지급형태 변경시 확정연금형, 상속연금형 또는 실적연금형을 선택한 경우에는 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② 제7조(계약의 무효)에 의거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서면에 의한 동의를 한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계약의 효력이 유지되는 기간 중에는 언제든지 서면동의를 장래에 한하여 철회할 수 있으며, 서면동의 철회로 계약이 해지되어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지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25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의한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종신연금형의 경우 연금지급개시 이후에는 서면동의를 철회할 수 없습니다.

제10조 【계약의 소멸】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또는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개인연금형은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부부연금형은 주피보험자(주된 보험대상자) 및 종피보험자(확장 보험대상자)가 모두 사망 등으로 인하여 이 약관에서 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 이 계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제11조 【보험나이】

- ① 이 약관에서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나이는 보험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제7조(계약의 무효) 제2호의 경우에는 실제 만나이를 적용합니다.
- ② 제1항의 보험나이는 계약일 현재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실제 만나이를 기준으로 6개월 미만의 끝수는 버리고 6개월 이상의 끝수는 1년으로 하여 계산하며, 이후 매년 계약해당일에 나이가 증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 ③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나이 또는 성별에 관한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정정된 나이 또는 성별에 해당하는 보험금 및 보험료로 변경합니다.

【보험나이 계산 예시】

생년월일 : 1991년 10월 2일, 현재(계약일) : 2012년 4월 13일
⇒ 2012년 4월 13일 - 1991년 10월 2일 = 20년 6월 11일 = 21세

제2관 보험료의 납입 (계약자의 주된 의무)

제12조 【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일】

- ①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자동이체납입 및 신용카드납입의 경우에는 자동이체 신청 및 신용카드매출승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때. 다만 계약자의 귀책사유로 보험료 납입 및 승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그러나 회사가 청약시에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승낙한 경우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이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보장개시일"이라 하며, 보장개시일을 "보험계약일"로 봅니다)
- ② 회사가 청약시에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도 보장개시일부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 ③ 회사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보장을 하지 아니합니다.
 1. 제39조(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의 효과)를 준용하여 회사가 보장을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2. 제38조(계약전 알릴의무)에 의하여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회사에 알린 내용 또는 건강진단 내용이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

3. 진단계약에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시까지 진단을 받지 아니한 경우
- ④ 청약서에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직업 또는 직종별로 보험가입금액의 한도액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그 한도액을 초과하여 청약을 하고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초과 청약액에 대하여는 보장을 하지 아니합니다.

제13조 [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

- ① 계약자는 제2회 이후의 기본보험료를 계약체결시 납입하기로 약속한 날 또는 보험료납입 일시중지기간 종료 후 도래하는 월계약해당일(이하 “납입기일”이라 합니다)까지 납입하여야 하고, 추가납입보험료는 계약일 이후 1개월이 지난 후부터 회사가 정한 방법 및 납입한도 내에서 「연금지급개시나이-5세 연계약해당일까지 수시로 납입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영수증을 발행하여 드립니다. 다만, 금융회사(우체국 포함)를 통하여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그 금융회사 발행 증빙서류를 영수증으로 대신합니다.
- ② 기본보험료를 선납할 경우에는 선납보험료는 당월분을 포함하여 24개월분 이하의 보험료를 선납할 때에 한하며, 선납보험료는 기본보험료의 배수로 납입하여야 합니다.

제14조 [납입된 보험료의 처리]

- ①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는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이 계약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된 특별계정 투입보험료(납입보험료에서 회사 소정의 사업비를 뺀 금액, 이하 “특별계정 투입보험료”라 합니다)를 제32조(계약자의 펀드 선택 및 변경) 제3항에 의해 일반계정에서 특별계정으로 이체합니다.
- ② 제1항에서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이라 함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1회 보험료의 경우 청약철회기간 내에 승낙된 경우에는 청약철회기간이 종료한 날의 다음날로, 청약철회기간이 지난 후 승낙된 경우에는 승낙일로 합니다. 이 경우 이체금액은 특별계정 투입보험료를 제1회 보험료 납입일부터 청약철회기간 종료일의 다음날까지는 예정이율로, 그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는 특별계정의 투자수익률(선택펀드가 2개 이상인 경우 해당 펀드의 투입비율로 가중 평균한 투자수익률)로 부리 적용한 금액으로 합니다.
 2. 제2회 이후의 기본보험료의 경우 납입기일의 전전일(前前日) 이전에 납입한 경우에는 「납입기일」로, 납입기일 전일(前日) 이후에 납입한 경우에는 「납입일+제2영업일」로 합니다. 이 경우 이체금액은 납입기일의 전전일(前前日) 이전에 납입한 경우에는 기본보험료를 납입일부터 납입기일까지 「예정이율」로 적용한 금액에서 회사 소정의 사업비를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납입기일의 전일(前日)에 납입한 경우에는 기본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예정이율」로 적용한 후 회사 소정의 사업비를 차감하고 「납입일 + 제2영업일」까지 「예정이율」로 적용한 금액으로 하며, 납입기일 이후에 납입한 경우에는 기본보험료에서 회사 소정의 사업비를 차감한 금액을 납입일부터 「납입일 + 제2영업일」까지 「예정이율」로 적용한 금액으로 합니다.
 3. 추가납입보험료는 「납입일 + 제2영업일」을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로 합니다. 이 경우 이체금액은 특별계정 투입보험료를 납입일부터 「납입일+제2영업일」까지 「예정이율」로 적용한 금액으로 합니다.
-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승낙을 거절한 경우에는 제1조(보험계약의 성립) 제4항을 적용하며, 계약자가 그 청약을 철회한 경우에는 제2조(청약의 철회) 제2항의 내용을 적용합니다.

제15조 [보험료납입 일시중지제도]

- ① 계약자는 보험계약일부부터 보험료 납입기간별로 다음에서 정하는 시점이 지난 이후부터 보험료 납입기간 이내에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보험료납입 일시중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험료 납입 일시중지기간 동안 기본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 납입기간	납입일시중지 신청 가능 시점
3년납	신청불가
5년납	3년

7년납	4년
10년이상	5년

- ② 제1항의 경우 보험료납입 일시중지 이후의 납입기일은 보험료납입 일시중지기간만큼 연기되고, 그에 따라 보험료 납입기간은 보험료납입 일시중지기간만큼 연장됩니다. 보험료납입 일시중지기간 중 납입하지 아니한 기본보험료는 연기된 보험료 납입기일 및 연장된 보험료 납입기간에 따라 납입하여야 합니다. 납입일시중지로 인하여 연기된 보험료 납입완료 시점부터 연금개시나이까지의 기간이 최소 거치기간 미만인 경우, 연금개시시점은 보험료 납입완료시점부터 최소 거치기간이 지난 후 최초의 연계약해당일로 연기됩니다.
- ③ 보험료납입 일시중지기간은 월계약해당일에 해지환급금(보험계약대출원리금을 차감한 금액)에서 월대체보험료의 공제가 가능한 기간 이내로 합니다. 다만, 보험료납입 일시중지기간 중 월대체보험료의 공제가 불가능할 경우 그 때부터 보험료납입 일시중지기간은 종료되며, 계약자는 보험료 납입기일까지 해당 기본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 ④ 보험료납입 일시중지 신청가능횟수는 총 5회를 한도로 합니다. 다만, 보험료납입 일시중지기간은 누적하여 36개월(기본보험료가 연체된 경우 연체 개월 수 포함)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험료납입 일시중지의 신청은 일단 위로 가능합니다.
- ⑤ 계약자는 보험료납입 일시중지기간동안 기본보험료 및 추가납입보험료를 납입할 수 없으며, 계약자가 보험료 납입 일시중지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보험료를 납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사에 보험료 납입을 신청함으로써 보험료를 납입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험료납입 일시중지기간은 그 때부터 종료되며, 계약자는 보험료 납입 기일까지 해당 기본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 ⑥ 회사는 보험료납입 일시중지기간 종료일 15일 이전에 계약자에게 보험료납입 일시중지기간의 종료(보험료 납입일시중지 신청으로 인한 월대체보험료가 해지환급금에서 더 이상 공제되지 못한다는 사실 등) 및 보험료 납입에 사항을 서면, 음성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안내합니다. 이 경우 계약자는 보험료납입 일시중지기간 종료 후 도래하는 월계약해당일까지 기본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 ⑦ 제3항 및 제6항에서 월계약해당일은 보험계약일부터 1개월 단위로 경과된 매월의 계약해당일을 말합니다. 다만, 해당월의 계약해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월의 말일을 계약해당일로 합니다.
- ⑧ 제3항 및 제6항에서 월대체보험료는 보험료납입 일시중지기간 중 월계약해당일의 해지환급금(보험계약대출원리금을 차감한 금액)에서 공제하는 금액으로 해당월의 보장계약 보험료 및 부가보험료(수금비 제외)의 합계액을 말합니다.

【월대체보험료 공제 예시】

예1) 계약일: 8월 15일, 보험료 납입일: 매일 20일
 예2) 계약일: 8월 15일, 보험료 납입일: 매일 10일
 →기간에 상관없이 매일 15일 월대체공제액 공제

【보험료납입 일시중지제도 예시】

계약일: 2012년 11월 1일. (5년납의 경우)
 3년(36회 납입)후인 2015년 11월 1일부터 보험료납입 일시중지제도를 신청(월대체보험료가 매월 적립금에서 공제가능한 유지계약에 한함):

- 2017년 5월 1일에 회사에 보험료 납입을 신청함으로써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 그 때부터 보험료납입일시중지기간은 종료되며 보험료 납입이 중지된 기간(2015년 11월 1일~2017년 4월 30일까지 18개월)만큼 해당 납입기일이 연기되어 2019년 4월 1일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 보험료납입 일시중지기간이 종료된 2017년 5월 1일 이후 추가로 4회 보험료납입 일시중지제도 신청이 가능하며, 추가로 보험료납입 일시중지가 가능한 기간은 총 신청가능한 기간인 36개월에서 기존 보험료납입 일시중지된 기간인 18개월을 차감하여 18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제16조 【보험료 납입중지】

- ① 계약자는 계약체결 후 만10년 이상 지난 계약에 한하여 보험료 납입기간 중 장래의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고 계약유지를 원할 경우 서면에 의해 보험료 납입중지를 회사에 신청할 수 있으며, 특약의 보험료는 완납되어야

합니다.

- ② 보험료 납입 중지 후 위험보험료 및 납입후 유지비는 계약해당일에 계약자 적립금에서 공제합니다.

제17조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

- ① 계약자는 제18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의한 기본보험료의 납입최고(독촉)기간이 지나기 전까지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기본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51조(보험계약대출) 제1항에 의한 보험계약대출금으로 기본보험료가 자동적으로 납입되어 계약은 유효하게 지속됩니다. 다만, 계약자가 서면이외에 인터넷 또는 전화(음성녹음) 등으로 자동대출납입을 신청할 경우 회사는 자동대출납입 신청내역을 서면 또는 전화(음성녹음) 등으로 계약자에게 알려드립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험계약대출금과 보험계약대출이자를 더한 금액이 해지환급금(당해 기본보험료가 납입된 것으로 계산한 금액을 말합니다)을 초과하는 때에는 기본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을 더 이상 할 수 없습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기본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기간은 최초 자동대출납입일로부터 1년을 최고 한도로 하며 그 이후의 기간에 대한 기본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을 위해서는 제1항에 따라 재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④ 기본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이 행하여진 경우에도 자동대출납입 전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자가 계약의 해지를 청구한 때에는 회사는 기본보험료의 자동대출 납입이 없었던 것으로 하여 제25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의한 해지환급금을 지급합니다.
- ⑤ 제1항 내지 제4항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납입 일시중지기간 중에는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제18조 【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 ①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기본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하여 기본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 또는 계약자의 신청에 의한 보험료납입 일시중지기간 중에 해지환급금(보험계약대출원리금을 차감한 금액)에서 월대체보험료를 충당할 수 없게 된 경우에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납입최고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최고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합니다)으로 정합니다. 이 경우 계약자(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경우 특정된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를 포함합니다)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다만, 해지 전에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하여 회사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 1. 납입최고(독촉)기간 내에 연체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
 - 2.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에 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이 경우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즉시 해지환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원리금이 차감된다는 내용을 포함합니다)
- ② 회사가 제1항에 의한 납입최고(독촉) 등을 전자문서로 안내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 수신확인을 조건으로 전자문서를 송신하여야 하며, 계약자가 전자문서에 대하여 수신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그 전자문서는 송신되지 아니한 것으로 봅니다. 회사는 전자문서가 수신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납입최고(독촉)기간을 설정하여 제1항에서 정한 내용을 서면(등기우편 등) 또는 전화(음성녹음)로 다시 알려드립니다.
- ③ 제1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제25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의한 해지환급금을 지급합니다.

제19조 【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

- ① 계약자의 보험료 납입연체 등의 사유로 해지된 계약에 대한 특별계정의 계약자적립금은 계약이 해지된 날을 기준으로 일반계정으로 이체하여 관리합니다.
- ② 제18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지환급금을 받지 아니한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의하여 해지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해지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2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이를 승낙한 때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기본보험료에 예정이

율+1%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하는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보험료납입 일시 중지기간 중에 납입하지 아니한 기본보험료는 연체된 기본보험료에 포함하지 아니합니다.

- ③ 회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낙한 계약의 경우 계약이 해지된 날부터 부활(효력회복)로 인하여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예정이율로 적립한 계약자적립금과 연체된 보험료 중 특별계정 투입보험료 해당액(연체된 보험료에 대한 이차포함)등을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일반계정에서 특별계정으로 이체합니다.
- ④ 제3항에서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이라 함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부활(효력회복) 승낙 후 연체된 기본보험료의 납입이 완료된 경우에는 「연체된 기본보험료 납입완료일 +제2영업일」
 - 2. 연체된 기본보험료의 납입을 완료한 후 제2영업일 이내에 부활(효력회복) 승낙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연체된 기본보험료 납입완료일 + 제2영업일」
 - 3. 연체된 기본보험료의 납입을 완료한 후 제2영업일이 지난 후에 부활(효력회복) 승낙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 승낙일
- ⑤ 제1항에 따라 해지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는 제1조(보험계약의 성립) 제3항 및 제4항, 제12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일), 제38조(계약전 알릴의무), 제39조(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의 효과) 및 제41조(사기에 의한 계약)를 준용합니다. 다만, 부활(효력회복)의 경우 제1회 보험료는 부활(효력회복)시의 보험료를 의미합니다.
- ⑥ 제2항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이 이루어진 경우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최초계약 청약시 제38조(계약전 알릴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제39조(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의 효과)가 적용됩니다.

제3관 보험금의 지급 (회사의 주된 의무)

제20조 【강제집행 등으로 인한 해지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 ① 회사는 계약자의 해지환급금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 담보권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절차에 의해 계약이 해지된 경우 해지 당시의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계약 해지로 회사가 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회사에게 지급하고 제8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1항 제4호에 따라 계약자 명의를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로 변경하여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음을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② 회사는 제1항에 의한 계약자 명의변경 신청 및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청약을 승낙합니다.
- ③ 회사는 제1항의 통지를 지정된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하여야 합니다. 다만, 회사는 법정상속인이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로 지정된 경우에는 제1항의 통지를 계약자에게 할 수 있습니다.
- ④ 회사는 제1항의 통지를 계약이 해지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 ⑤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는 통지를 받은 날(제3항에 의해 계약자에게 통지된 경우에는 계약자가 통지를 받은 날을 말합니다)부터 15일 이내에 제1항의 절차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제21조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약정한 보험금(<별표1> "보험금 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합니다.

- 1.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망하였을 때 : 사망보험금을 지급
- 2.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매년 보험계약해당일에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살아있을 때 : 연금지급형태에 따라 매년 생존연금을 지급(기간보장부 종신연금형, 금액보장부 종신연금형, 상속연금형)
- 3.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계약자가 선택한 기간의 매년 보험계약해당일 : 연금지급형태에 따라 매년 연금을 지급(확정연금형, 실적연금형)

제22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제3조(계약의 체결 및 보험료) 제1항, 제9조(계약자의 임의해지 및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서면동의 철회권) 제2항, 제10조(계약의 소멸) 및 제2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호의 사망에는 보험기간 중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를 포함합니다.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등 민법 제27조(실종의 선고) 제2항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 또는 "재해분류표"(<별표2>"재해분류표" 참조)에서 정하는 재해(이하 "재해"라 합니다)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정부기관이 인정하여 관공서의 사망보고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경우에는 그러한 사고가 발생한 때를 사망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 ② 제3조(계약의 체결 및 보험료) 제1항, 제2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호, 제23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및 제48조(보험금 받는 방법의 변경) 제1항의 사망보험금은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망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사망보험금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을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최저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 ③ 제2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2호의 생존연금 및 동조 제3호의 연금은 연금개시시의 계약자적립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연금개시시의 계약자적립금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을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최저연금적립금으로 하여 계산한 금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조문 내용】

민법 제27조(실종의 선고)

- ① 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하여야 한다.
- ② 전지에 임한 자, 침몰한 선박중에 있던 자, 추락한 항공기중에 있던 자 기타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을 당한 자의 생사가 전쟁종지후 또는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기타 위난이 종료한 후 1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도 제1항과 같다. <개정 1984.4.10>

제23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합니다.

1.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가.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써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제2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호의 사망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종신연금형의 경우 연금지급 개시 이후에는 잔여 보증지급 금액을 지급합니다)
 - 나.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우는 부활(효력회복)청약일)부터 2년이 지난 후에 자살한 경우에는 제2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호의 사망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종신연금형의 경우 연금지급개시 이후에는 잔여 보증지급 금액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보험대상자)를 해친 경우
그러나, 그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일부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인 경우에는 그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금을 다른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보험대상자)를 해친 경우

제24조 【공시이율의 적용 및 공시】

- ①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연금액 및 연금지급개시 후 책임준비금 계산시 적용되는 적립이율은 이 보험의 공시이율(이하 "공시이율"이라 합니다)로 합니다. 다만, 제8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5항에 의해 연금지급형태 변경시 실적연금형을 선택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 ② 공시이율은 아래의 방법에 따라 회사가 정한 이율로 매월 1일 적용합니다. 회사는 공시기준이율에서 장래 운용수익률, 향후 예상수익 등을 고려한 조정률을 가감하여 공시이율을 결정하며, 공시이율은 산출 공시기준이

율의 80%~120%범위 내에서 정합니다.

【공시 기준이율의 산출】

1. 공시기준이율은 운용자산수익률에서 투자 지출율을 차감한 내부지표와 국고채 수익률, 회사채 수익률 및 통화안정증권수익률을 반영한 외부지표를 산출 평균하여 산출합니다.

$$\text{공시기준이율 산출식} = \frac{\text{내부지표} + \text{외부지표}}{2}$$

2. 내부지표 산출식(%) =

$$\frac{2 \times (I - E)}{A_{12} + A_0 - (I - E)} \times 100$$

I: 산출시점 직전 12개월간 투자 영업수익

E: 산출시점 직전 12개월간 투자 영업비용

A: 보험업감독규정에 따라 작성된 대차대조표상 운용자산의 월말잔액

A₁₂: 산출시점 직전 12개월 초 현재 운용자산

A₀: 산출시점 직전 월말 현재 운용자산

3. 외부지표 산출식(%) = (B₁ + B₂ + B₃) / 3

B₁: 국고채 수익률의 산출시점 직전 3개월 가중이동평균이율

B₂: 회사채 수익률의 산출시점 직전 3개월 가중이동평균이율

B₃: 1년만기 통화안정증권수익률의 산출시점 직전 3개월 가중이동평균이율

$$\text{가중이동평균이율}(B_i) = \frac{B_i(-3) \times 1 + B_i(-2) \times 2 + B_i(-1) \times 3}{6}$$

B_i(-3): 산출시점에서 직전3월의 월평균 수익률

B_i(-2): 산출시점에서 직전2월의 월평균 수익률

B_i(-1): 산출시점에서 직전1월의 월평균 수익률

- 국고채 수익률은 한국금융투자협회가 매일 공시하는 3년 만기 국고채권의 최종호가수익률로 합니다.
- 회사채 수익률은 한국금융투자협회가 매일 공시하는 3년 만기 무보증 회사채 (AA-) 의 최종호가 수익률로 합니다.
- 통화안정증권 수익률은 한국금융투자협회가 매일 공시하는 통화안정증권(1년)의 최종호가수익률로 합니다.
- 각각의 이율은 각 월의 직전 1월의 16일부터 각 월의 당월 15일까지의 국고채평균수익률, 회사채 평균수익률 및 통화안정증권 평균수익률을 기준으로 합니다.
- 세부 지표 금리의 산출이 불가능하거나, 시장의 실세금리로서의 대표성을 상실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회사에서 정하는 공시이율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세부 지표금리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4. 공시기준이율 산출시 내부지표 및 외부지표는 일반계정과 특별계정을 구분하여 산출합니다.

- ③ 제2항의 공시이율은 동종상품[제2항에 따라 공시이율이 운용되는 상품]의 배당보험 공시이율보다 높게 적용합니다.
- ④ 회사는 계약자에게 연 1회 이상 공시이율의 변경내용을 통지합니다.
- ⑤ 공시이율의 최저보증이율은 가입 후 경과기간 10년 이내에는 연복리 2.5%, 10년 초과시에는 연복리 2.0%를 적용합니다.
- ⑥ 세부적인 공시이율의 운용방법은 회사에서 별도로 정한 운용지침을 따릅니다.
- ⑦ 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공시이율을 매일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시합니다.

제25조 [해지환급금]

- ① 이 약관에 의해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 지급하는 해지환급금은 계약이 해지된 날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이 계약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합니다.
- ② 제1항에 불구하고 제8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3항 및 제9조(계약자의 임의해지 및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서면동의 철회권)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가 해지된 경우에 지급하는 해지환급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해지신청일+제2영업일」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이 계약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한 금액다만, 제8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5항에 의해 연금지급형태 변경시 실적연금형을 선택한 경우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동안의 실적연금형에 해당하는 해지환급금을 포함합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불구하고 제8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5항에 의해 연금지급형태 변경시 확정연금형 또는 상속연금형을 선택한 경우 연금개시후 보험기간의 확정연금형, 상속연금형에 해당하는 해지환급금은 계약이 해지된 날을 기준으로 이 계약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합니다.
- ④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및 연금개시후 보험기간의 해지환급금은 연금개시전 보험기간의 특별계정의 운용실적에 따라 변동되므로 최저보증이 이루어지지 않으며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 ⑤ 제3항의 해지환급금 계산시 적용되는 공시이율은 제24조(공시이율의 적용 및 공시)에 정한 이율(다만, 가입 후 경과기간 10년 이내에는 연복리 2.5%, 10년 초과 시에는 연복리 2.0%를 최저한도로 적용합니다)로 합니다.
- ⑥ 회사는 경과기간별 해지환급금에 관한 표를 계약자에게 제공하여 드립니다.

제26조 [배당금의 지급]

이 계약은 무배당보험이므로 계약자배당금이 없습니다.

제27조 [소멸시효]

보험금 청구권, 보험료 또는 환급금 반환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소멸시효]

주어진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때 그 권리가 없어지게 되는 기간으로 보험사고가 발생한 후 2년간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은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제4관 특별계정에 관한 사항

제28조 [계약자적립금의 계산]

- ① 이 계약의 계약자적립금 계산은 이전 계약자적립금과 특별계정 투입보험료에서 중도인출금액 및 매월 계약해당일에 월공제액(당월분의 사망보장 위험보험료와 납입후 유지비 등)을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매일 특별계정의 운용실적을 반영하여 이 계약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합니다.
- ② 회사는 특별계정에서 운용되는 계약자적립금에서 매일 최저사망보험금 보증비용, 최저연금적립금 보증비용, 특별계정 운용보수 및 특별계정 수탁보수를 차감합니다.
- ③ 연금개시시점에 계약자적립금은 일반계정으로 이체되며(다만, 실적연금형을 선택한 경우를 제외합니다), 이체된 일반계정의 적립액은 공시이율로 부리 적립됩니다. 이 때 적용되는 공시이율은 가입후 10년 이내에는 연복리 2.5%, 10년 초과시에는 연복리 2.0%를 최저한도로 적용합니다.
- ④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실적연금형을 선택한 경우에는 계약자적립금은 특별계정의 운용실적을 반영하여 이 계약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합니다.

제29조 [펀드의 운용 및 평가]

- ① 변액보험의 펀드는 특별계정별로 일반보험의 자산과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운용되며, 자산운용실적이 계약자

적립금에 즉시 반영될 수 있도록 매일 평가합니다.

- ② 제1항의 특별계정에서 관리되는 자산의 운용실적에 의한 이익 및 손실은 다른 계정의 자산운용에 따른 이익 및 손실에 관계없이 이 계약으로 귀속됩니다.
- ③ 계약자는 특별계정의 자산운용방법에 대해서는 일체의 관여를 할 수 없습니다.
- ④ 회사는 이 계약의 운용자산을 회사가 운영하는 다른 변액보험의 유사한 성격의 운용자산별로 통합하여 운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펀드 통합사유, 통합일자, 기타펀드통합 관련사항을 일간신문(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등록) 제1항 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일간신문으로서 동법 제2조 제2호 '가' 또는 '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하며, 이하 같습니다)에 공고하거나 계약자에게 개별 통지하며, 펀드를 통합한 날 이후 6개월이 경과하는 날까지 각 펀드의 결산서류를 회사 본점에 비치합니다.

제30조 [펀드의 유형]

- ① 펀드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구체적인 펀드 유형 및 내용은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 1. 채권형(1형, 2형) : 채권[전환사채, 교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주식관련사채, 사모사채 및 자산유동화증권(후순위채 포함)을 포함합니다], 대출 및 채권관련 파생상품 등에 순자산(NAV)의 95% 이내로 투자하고, 나머지는 유동성 확보를 위하여 유동성자산 및 수익증권에 투자합니다.
 - 2. 인덱스(INDEX)혼합형(1형, 2형) : 채권[전환사채, 교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주식관련사채, 사모사채 및 자산유동화증권(후순위채 포함)을 포함합니다], 대출 및 채권관련 파생상품 등에 순자산(NAV)의 80% 이내로 투자합니다. 주식(코스닥 주식 등 포함), 상장지수투자신탁 및 주식관련 파생상품에 순자산(NAV)의 30% 이내에서 투자하며, 상기의 주식에 투자함에 있어 한국주가지수200(KOSPI200지수) 등을 목표지수(Target Index)로 하여 인덱스지수의 수익률을 추종할 수 있도록 운용하며, 나머지는 유동성 확보를 위하여 유동성자산 및 수익증권에 투자합니다.
 - 3. 주식혼합형(1형, 2형) : 채권[전환사채, 교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주식관련사채, 사모사채 및 자산유동화증권(후순위채 포함)을 포함합니다], 대출 및 채권관련 파생상품 등에 순자산(NAV)의 80% 이내로 투자하고, 주식(코스닥 주식 등 포함) 및 주식관련 파생상품에 순자산(NAV)의 30% 이내에서 투자하며, 나머지는 유동성 확보를 위하여 유동성자산 및 수익증권에 투자합니다.
 - 4. 안정성장형 / 안정성장형Ⅱ : 주식(거래소 및 코스닥주식 포함, 관리종목은 제외) 및 주식 관련 파생상품에 순자산(NAV)의 50%이내를 투자하고, 채권[전환사채, 교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주식관련 사채, 사모사채 및 자산유동화증권(후순위채권 포함)을 포함합니다], 대출 및 채권관련 파생상품, 유동성 확보를 위한 우량 금융기관 등의 유동성 자산 및 수익증권 등에 순자산의 50% 이상을 투자합니다.
 - 5. 인덱스성장형 : 채권[전환사채, 교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주식관련 사채, 사모사채 및 자산유동화증권(후순위채권 포함)을 포함합니다], 채권형 수익증권, 대출 및 채권관련 파생상품, 유동성 확보를 위한 우량 금융기관 등의 유동성 자산 및 수익증권 등에 순자산의 50% 이상을 투자합니다. 주식(거래소 및 코스닥주식 포함, 관리종목은 제외), 주식형 수익증권, 상장지수투자신탁 및 주식 관련 파생상품에 순자산(NAV)의 50%이내에서 투자하며, 상기의 주식에 투자함에 있어 한국주가지수200(KOSPI200) 등을 목표지수로 하여 인덱스지수의 수익률을 추종할 수 있도록 운용합니다.
 - 6. 글로벌혼합형 : 국내외 주식, 주식관련 파생상품, 주식형 수익증권(이하 “주식 등”이라 합니다)에 순자산(NAV)의 30%이내에서 투자하고, 나머지는 국내외 우량채권, 채권관련 파생상품, 채권형 수익증권, 대출 및 유동성자산 등에 투자합니다. 다만, 주식 등에의 투자는 아시아 등 이머징 마켓(Emerging Market) 위주로 운용하되 시장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합니다.
 - 7. 이머징브릭스주식성장형 : 신흥 이머징마켓과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등 BRICs 지역에 속하는 주식, 주식관련 파생상품 및 수익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 포함) 등에 펀드순자산(NAV)의 60%이내로 투자함을 원칙으로 하며, 국내채권, 채권관련 파생상품(국채선물 등) 및 수익증권, 유동성 확보를 위한 유동성자산 등에 펀드순자산(NAV)의 40% 이상을 투자합니다.
- ② 제1항에서 회사가 운용재산인 유가 증권 등의 가격변동 및 해지 등의 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한도를 초과 또는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그 투자한도를 적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 ③ 제1항의 투자대상은 보험업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서 운용되고 그 관계 법령이 제개정될 경우 대체 또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 ④ 제1항에서 정한 펀드의 유형 이외에 새로운 펀드가 추가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미 가입한 계약자도 신규펀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규펀드 추가로 인해 최저사망보험금 보증비용 및 최저연금적립금 보증비용이 변경될 경우에는 신규펀드를 선택할 수 없습니다.

제31 조 【계약자의 펀드자동재배분 선택】

- ① 계약자는 계약 체결시 펀드자동재배분을 선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일부터 계약자가 선택한 기간 단위(6개월, 12개월 단위 중 택일)로 계약체결시 선택한 펀드의 투입비율로 자동 재배분 됩니다.
- ② 보험기간 중 펀드의 투입비율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펀드 투입비율에 따라 자동 재배분 되며, 이 경우에도 계약일부터 계약자가 선택한 기간 단위(6개월, 12개월 단위 중 택일)로 자동 재배분 됩니다.
- ③ 계약자는 보험기간 중 펀드자동재배분을 선택 또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 ④ 펀드자동재배분은 계약일부터 계약자가 선택한 기간 단위(6개월, 12개월 단위 중 택일)로 실행되며, 실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다음 영업일에 실행됩니다.

【설명】
 펀드자동재배분이라 함은 일정 주기마다 펀드별 계약자적립금을 고객이 선택한 펀드편입비율로 재배분하는 옵션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3개월주기 펀드자동재배분, A펀드 50% + B펀드 50%를 선택한 경우에는 매3개월마다 A펀드와 B펀드의 계약자적립금은 1:1의 비율로 재배분됩니다.

제32 조 【계약자의 펀드 선택 및 변경】

- ① 계약자는 보험계약체결시 제30조(펀드의 유형)에서 정한 펀드 중 하나 이상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선택한 펀드가 2개 이상인 경우 펀드 각각에 대하여 펀드별 투입비율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다만, 이머징브릭스주식성장형의 편입비율은 50%이내로 합니다.) 매년 12회 이내의 범위에서 펀드별 투입비율의 변경을 회사에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 ② 추가납입보험료는 계약자의 지정이 있을 경우 그 지정한 비율을 따라 해당 펀드로 투입되고, 지정이 없을 경우 펀드별 투입비율에 따라 해당 펀드에 투입됩니다.
- ③ 특별계정 투입보험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설정한 펀드별 투입비율에 따라 분산 투입됩니다.
- ④ 계약자는 계약일 이후 매년 12회 이내의 범위에서 펀드 적립금의 일부 및 전부 이전을 회사에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펀드 적립금 이전 시에는 10만원이상 이전하여야 합니다.
- ⑤ 회사는 제4항에 의한 펀드 적립금의 이전을 요청 받은 경우에는 제37조(특별계정의 폐지) 제1항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변경요구일 + 제5영업일」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현금을 이전하는 방식에 따릅니다.
- ⑥ 제31조(계약자의 펀드자동재배분 선택)에 의해 펀드자동재배분을 선택한 계약자의 펀드 변경요구는 펀드자동재배분 실행 예정일 직전 제5영업일 이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 ⑦ 회사는 천재·지변, 유가증권 시장의 폐쇄·휴장, 유가증권 등의 매각지연, 기타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5항에서 정하는 날까지 이전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 및 향후 이전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계약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보험재산이 처분되는 날부터 제5영업일을 기준으로 현금을 이전하는 방식을 따른다.

제33 조 【자산의 평가방법 및 운용】

- ① 특별계정의 자산은 원칙적으로 시가법에 의해서 평가하며 시가법은 각 특별계정별로 적용됩니다.
- ② 특별계정의 유가증권 평가방법 및 운용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정한 방법에 따릅니다.

제34조 【특별계정 좌수 및 기준가격】

특별계정 좌수 및 기준가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출합니다.

1. 좌수

특별계정 설정시 1원을 1좌로 하며, 그 이후에는 매일 좌당 기준가격에 따라 좌단위로 특별계정에 이체 또는 인출합니다.

2. 좌당 기준가격

특별계정의 좌당 기준가격은 다음과 같이 산출하되,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원미만 둘째 자리까지 계산하며 최초 판매개시일의 기준가격은 1,000좌당 1,000원으로 합니다.

$$\text{좌당 기준 가격} = \frac{\text{당일 특별계정의 순자산가치}}{\text{특별계정의 총 좌수}}$$

다만, 당일 특별계정의 순자산가치라 함은 당일 특별계정의 총자산에서 특별계정 운용보수, 특별계정 수탁보수, 최저사망보험금 보증비용 및 최저연금적립금 보증비용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예시】

예를 들어,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특별계정 투입보험료가 1,000만원이며, 해당일자의 펀드기준가격이 1,250.00일 경우,
계약자 보유좌수는 1,000만원 ÷ 1,250.00 × 1,000 = 800만 (좌수)
이후 특별계정의 자산운용실적이 좋아져서 펀드 기준가격이 1,400.00으로 증가하였다면,
계약자 적립액은 800만(좌수) × 1,400.00 ÷ 1,000 = 1,120만원으로 증가합니다.

제35조 【특별계정의 제비용 및 보수에 관한 사항】

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8조(신탁계약의 체결 등)에 의한 보수, 그 밖의 수수료와 동법 시행령 제265조(회계감사인의 선임 등)에 의한 회계감사비용, 채권평가비용 및 유가증권 매매수수료 등을 특별계정 자산에서 인출하여 부담합니다. 다만 자산운용 보고서를 작성제공하는데 드는 비용은 회사가 부담합니다.

제36조 【계약자 공지에 관한 사항】

- ① 회사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을 그 사유발생 후 회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계약자에게 공지합니다.
 1. 투자운용인력의 변경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수시공시의 방법 등) 제2항에서 정하는 부실자산이 발생한 경우 그 내역 및 상각률
 3. 회사의 합병, 분할, 분할합병 또는 영업의 양도·양수
 4. 기준가격을 잘못 산정하여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
- ② 회사는 변액보험 판매 후 매 3개월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8조(자산운용보고서의 교부)에서 규정한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계약자에게 제공합니다.

제37조 【특별계정의 폐지】

-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특별계정을 폐지할 수 있습니다.
 1. 당해 각 특별계정의 자산이 급격히 감소하거나, 자산가치의 변화로 인하여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해진 경우
 2. 당해 각 특별계정의 자산운용대상이 소멸할 경우
 3. 기타 제1호 내지 제2호에 준하는 경우
- ② 회사는 제1항에서 정한 사유로 각 특별계정을 폐지할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폐지사유, 폐지일까지의 계약자적립금과 함께 제32조(계약자의 펀드선택 및 변경)의 규정에 따른 펀드변경 선택에 관한 안내문 등을 작성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 드립니다. 다만, 계약자가 펀드변경을 별도로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회사가 유사한 펀드로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 ③ 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유로 계약자가 펀드 변경을 요구한 경우에는 펀드변경에 따른 수수료를 계

약자에게 청구하지 않으며, 연간 펀드변경 횟수에 포함시키지 아니합니다.

제5관 보험계약시 계약자의 계약전 알릴의무 등

제38조 【계약전 알릴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청약시(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서 포함)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계약전 알릴의무"라 하며, 상법상 "고지의무"와 같습니다) 합니다. 다만, 진단계약에서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 및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계약전 알릴의무】

상법 제651조(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에서 정하고 있는 의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는 청약시에 보험회사가 서면으로 질문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 위반시 **보험계약의 해지 또는 보험금 부지급**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사항이란, 보험회사가 이를 알았더라면 보험계약의 체결을 거절하였거나, 적어도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리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사항을 말합니다.

【조문 내용】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 ① 이 법에서 "의료기관"이란 의료인이 공중(公衆)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의료·조산의 업(이하 "의료업"이라 한다)을 하는 곳을 말한다.
- ②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개정 2009.1.30, 2011.6.7>
 1. 의원급 의료기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각각 그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목별로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으로 나뉜다.
 2. 조산원: 조산사가 조산과 임부해산부산육부 및 신생아를 대상으로 보건활동과 교육·상담을 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3. 병원급 의료기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목별로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종합병원으로 나뉜다.

제39조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의 효과】

- ① 회사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제38조(계약전 알릴의무)에도 불구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 중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 합니다.
 1. 회사가 계약 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
 2.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나 또는 보장개시일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2년(진단계약의 경우 질병에 대하여는 1년)이 지났을 때
 3. 계약체결일로부터 3년이 지났을 때
 4. 회사가 이 계약의 청약시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기초자료 (건강진단서 사본 등)에 의하여 승낙한 경우에 건강진단서 사본 등에 명기되어 있는 사항으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회사에 제출한 기초자료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때에는 제외)
 5. 보험설계사 등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고지할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하였거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실대로 고지하는 것을 방해한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 대해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게 하였거나 부실한 고지를 권유했을 때
- 다만, 보험설계사 등의 행위가 없었다 하더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거나 부실한 고지를 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② 제1항의 중요한 사항이라 함은 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계약의 청약을 거절하거나 보험 가입금액 한도 제한, 일부 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과 같이 조건부로 인수하는 등 계약 인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합니다.
- ③ 회사는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경우에는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사실뿐만 아니라 계약 전 알릴의무사항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되는 사유 및 계약의 처리결과를 "반대증거가 있는 경우 이익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계약자에게 서면으로 알려 드립니다.
- ④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하였을 때에는 제25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의한 해지환급금을 드리며, 보장을 제한하였을 때에는 보험료, 보험가입금액 등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 ⑤ 제38조(계약전 알릴의무)의 계약전 알릴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제1항에 불구하고 계약의 해지 또는 보장을 제한하기 이전까지 발생한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⑥ 회사는 다른 보험가입내역에 대한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사례]

보험계약을 청약하면서 보험설계사에게 고혈압이 있다고만 얘기하였을 뿐, 청약서의 계약전알릴사항에 아무런 기재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험설계사에게 고혈압 병력을 얘기하였다고 하더라도 보험회사는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40조 【중대사유로 인한 해지】

- ①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1.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고의로 보험금 지급사유를 발생시킨 사유
 - 2.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재하였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 다만,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② 회사가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한 경우 회사는 그 취지를 계약자에게 통지하고 제25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의한 해지환급금을 지급합니다.

제41조 【사기에 의한 계약】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대리진단, 약물복용을 수단으로 진단절차를 통과하거나 진단서 위변조 또는 청약일 이전에 암 또는 에이즈의 진단 확정을 받은 후 이를 숨기고 가입하는 등의 뚜렷한 사기행위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에는 보장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사기사실을 안 날부터는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6관 보험금 지급 등의 절차

제42조 【주소변경 통지】

- ①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타인을 위한 계약에 해당합니다)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변경내용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② 제1항에서 정한 대로 계약자가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자가 회사에 알린 최종의 주소 또는 연락처로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도달에 필요한 시일이 지난 때에 계약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봅니다

제43조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지정】

이 계약에서 계약자가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를

제2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 사유) 제2호의 경우는 계약자로 하고, 동조 1호의 경우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상속인으로 합니다.

제44조 【대표자의 지정】

- ①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각 대표자 1인을 지정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그 대표자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를 대리하는 것으로 합니다.
- ② 지정된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있는 곳이 확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계약에 관하여 회사가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 1인에 대하여 한 행위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칩니다.
- ③ 계약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책임을 연대로 합니다.

제45조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통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나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는 제2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제46조 【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

- ①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 또는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 책임준비금 또는 해지환급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사망진단서 등)
 3.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주민등록등본(생존연금 또는 연금 지급시)
 4.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포함)
 5. 기타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 ② 병원 또는 의원에서 발급한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 관련법에서 정하는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제47조 【보험금 등의 지급】

- ① 회사는 제46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 책임준비금 또는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보험금의 경우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 후 10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② 회사는 제2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2호 생존연금 또는 동조 제3호 연금의 지급시기가 되면 지급시기 7일 이전에 그 사유와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알려드리며, 제1항에 의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함에 있어 보험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보험금 지급시의 적립이율 계산(<별표3> “보험금 지급시의 적립이율 계산” 참조)과 같습니다.
- ③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는 제39조(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의 효과) 및 제1항의 보험금 지급사유 조사와 관련하여 의료기관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찰서 등 관공서에 대한 회사의 서면에 의한 조사요청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실확인이 끝날 때까지 회사는 보험금 지급지연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 ④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 및 확인을 위하여 제1항의 지급기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사유, 지급예정일 및 보험금 가지급 제도에 대하여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즉시 통지하여 드립니다. 다만, 지급예정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46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영업일 이내에 정합니다.
 1. 소송제기

2. 분쟁조정신청
3. 수사기관의 조사
4. 해외에서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한 조사
5. 제3항에 의한 회사의 조사요청에 대한 동의 거부 등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 및 확인이 지연되는 경우
- ⑤ 제4항에 의하여 지급할 보험금의 결정과 관련하여 보험금 지급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청구에 따라 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을 우선적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 ⑥ 회사가 제1항의 지급사유 조사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제3의 의사를 정하고 그 제3의 의사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이 약관에서 “제3의 의사”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며, 이 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비용은 회사가 부담합니다.

【영업일】

“토요일”, “일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정한 공휴일” 및 “근로자의 날”을 제외한 날을 의미합니다.

제48조 【보험금 받는 방법의 변경】

- ① 계약자[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비에 따라 제2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호에 의한 사망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나누어 지급하거나 일시에 지급하는 방법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는 제1항에 의하여 일시금을 나누어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예정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하며, 나누어 지급하는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예정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할인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제49조 【계약내용의 교환】

회사는 보험계약의 체결 및 관리 등을 위한 판단자료로서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계약자 및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보험회사 및 보험관련단체 등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수집·조사 및 처리의 제한) 제2항, 제32조(개인 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 제 33조(개인신용정보의 이용), 동법 시행령 제28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 등),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 제23조(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및 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한)의 규정을 따릅니다.

1. 계약자 및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 계약일, 보험종목, 보험료, 보험가입금액 등 계약내용
3. 보험금과 각종 급부금액 및 지급사유 등 지급내용
4.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질병에 관한 정보

제50조 【계약자적립금의 인출】

- ① 계약자는 계약일 이후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 계약일 이후 1 개월이 지난 후부터 보험년도 기준 연 12회에 한하여 계약자적립금의 일부를 인출할 수 있습니다. 1회 인출할 수 있는 금액은 인출할 당시 해지환급금(다만, 보험계약대출적립금을 제외한 금액)의 50%를 최고 한도로 하고, 계약 후 경과기간 10년 이내의 총 인출금액은 계약자가 실제 납입한 보험료 총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인출신청일 + 제2영업일」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인출금액은 10만원 이상 만원단위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 ② 제1항에 따라 계약자적립금의 일부를 인출하기 위해서는 인출후 계약자적립금이 100만원 미만인 되지 않아야 합니다.
- ③ 제1항에 따라 계약자 적립금을 인출한 경우 제2조(청약의 철회) 제2항, 제4조(용어의 정의) 제7호 및 제9호, 제6조(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제4항, 제7조(계약의 무효), 제8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5항, 제22조(보험금 지

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2항 및 제3항에서 정하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 인출 후 「이미 납입한 보험료」

$$= \text{인출 직전 「이미 납입한 보험료」} \times$$

$$\frac{\text{인출 시 계약자적립금} - \text{인출금액}}{\text{인출 시 계약자적립금}}$$

(※ 「인출 직전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해당 인출 전에 인출 및 감액이 발생한 경우 제8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4항 및 상기 방법에 따라 계산된 이미 납입된 보험료를 말합니다.

- ④ 계약자적립금의 인출은 추가납입보험료에 의한 계약자적립금에서 우선적으로 가능하며, 추가납입보험료에 의한 계약자적립금이 부족한 경우에 한하여 기본보험료 계약자적립금에서 인출 가능합니다.
- ⑤ 제1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계약자적립금의 인출로 인하여 장래의 보장계약의 보험료 및 유지비를 충당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인출할 수 없습니다.
- ⑥ 제1항 내지 제5항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납입 일시중지기간 중 계약자적립금을 인출할 경우의 해지환급금은 계약자적립금 인출 당시의 해지환급금(보험계약대출원리금을 차감한 금액)에서 월대체보험료 합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보험년도】
당해년도 보험계약 해당일로부터 차년도 보험계약 해당일 전일까지 매1년 단위의 연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보험계약일이 2012년 8월 15일인 경우 보험년도는 8월 15일부터 차년도 8월 14일까지 1년이 됩니다.
【적립액의 인출 예시】
예) 해지환급금 150만원, 적립액이 170만원일 경우 → 최대인출 한도 적용시 해지환급금의 50%인 75만원이 최고한도이나, 인출 후 적립금이 170만원- 75만원 = 95만원으로 100만원 미만이 되므로 최대 70만원까지 인출이 가능합니다.

제51 조 【보험계약대출】

- ① 계약자는 연금지급 개시 이전에 이 계약의 해지환급금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대출(이하 "보험계약대출"이라 합니다)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8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5항에 의해 연금지급형태 변경시 확정연금형, 상속연금형 또는 실적연금형을 선택한 경우에는 연금지급이 개시된 후에도 이 계약의 해지환급금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대출(이하 "보험계약대출"이라 합니다)을 받을 수 있습니다.
- ② 계약자는 제1항에 의한 보험계약대출금과 보험계약대출이자를 언제든지 상환할 수 있으며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금, 해지환급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에 지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원리금을 차감할 수 있습니다.
- ③ 회사는 제18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즉시 해지환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 원리금을 차감할 수 있습니다.
- ④ 제1항에 의하여 보험계약대출이 이루어졌을 경우 보험계약대출금액은 「신청일+제2영업일」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각각의 펀드 적립금 비율에 따라 특별계정에서 일반계정으로 이체한 후 「보험계약대출이율-1.5%」로 보험계약대출적립금으로 적립합니다. 다만, 계약자에 의한 보험계약대출원리금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상환이 있는 경우 상환금액은 상환일로부터 「상환일+제2영업일」까지 「예정이율」로 부리적립 한 후, 「상환일+제2영업일」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일반계정에서 특별계정으로 이체하며, 보험계약대출적립금에서는 제외됩니다. 이 때 상환금액의 펀드별 분배금액은 상환일 기준 펀드별 투입비율을 따릅니다.
- ⑤ 연금개시후 보험기간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은 「공시이율+1.5%」로 하고, 보험계약대출이율이 변경 될 때에는 월가중 평균한 이율로 합니다. 다만, 제8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5항에 의해 연금지급형태 변경시 실적연금형을 선택한 경우에는 제4항에 준하여 연금개시전 보험기간과 동일하게 운용합니다.
- ⑥ 회사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보험계약대출 사실을 통지할 수 있습니다.

제7관 분쟁조정 등

제52조 【분쟁의 조정】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분쟁 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과 회사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53조 【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소송 및 민사조정은 계약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와 계약자가 합의에 의하여 관할법원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제54조 【약관의 해석】

- ① 회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약관을 해석하여야 하며 계약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지 아니합니다.
- ② 회사는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 ③ 회사는 보상하지 않는 사항 등 계약자나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불리하거나 부담을 주는 내용은 확대하여 해석하지 아니합니다.

제55조 【회사가 제작한 보험안내자료 등의 효력】

보험설계사 등이 모집과정에서 사용한 회사 제작의 보험안내자료(계약의 청약에 권유하기 위해 만든 자료 등을 말합니다) 내용이 이 약관의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제56조 【보험계약의 변동사항 통지】

- ① 회사는 계약일부터 반기별로 보험계약의 변동내용을 계약자에게 서면으로 알려 줍니다. 다만, 계약자가 보험 계약 체결시 혹은 보험기간 중 전자우편을 통하여 수령한다는 의사표시를 서면, 전화(음성녹취) 또는 인터넷 등으로 동의한 경우에는 전자우편을 통하여 제공할 수 있습니다.
- ② 제1항의 경우 금융감독원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다른 추가적인 사항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제57조 【결산사항의 통지】

회사는 사업년도 종료시 특별계정의 결산사항을 금융감독원에 보고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계약자에게 서면으로 알려 드립니다.

제58조 【회사의 손해배상책임】

- ① 회사는 계약과 관련하여 임직원, 보험설계사 및 대리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및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관계법률 등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 ② 회사는 보험금 지급거절 및 지연지급의 사유가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소를 제기하여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 ③ 회사가 보험금 지급여부 및 지급금액에 관하여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곤궁,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합의를 한 경우에도 회사는 제2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제59조 【회사의 파산선고와 해지】

- ① 회사가 파산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지하지 아니한 계약은 파산선고 후 3개월을 경과한 때에는 그 효력을 잃습니다.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되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효력을 잃는 경우에 회사는 제25조 (해지환급금) 제1항에 의한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드립니다.

제60조 【준거법】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한민국 법령을 따릅니다.

제61조 【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이 계약은 예금자보호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별표 1)

보험금 지급기준표

1. 연금개시전 보험기간(보험계약일부터 연금지급개시나이 계약해당일 전일까지)

[기준 : 1구좌]

급여명	지급사유	지급액
사망보험금 (제21조 제1호)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망하였을 때	600만원 + 사망 당시 계약자적립금

2. 연금개시후 보험기간(연금지급개시나이 계약해당일부터 종신까지)

계약자가 선택한 연금지급형태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연금을 지급합니다.

가. 기간보증부 종신연금형

①개인연금형

[기준 : 1구좌]

급여명	지급사유	지급액
생존연금 (제21조 제2호)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매년 보험계약 해당일에 살아있을 때	연금지급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금(다만, 연금지급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금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을 경우 최저연금적립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 지급 - 정액형 : 10년, 20년, 100세 보증 - 체증형(5%, 10%체증) : 10년, 20년보증

②부부연금형

[기준 : 1구좌]

급여명	구분	지급사유	지급액
생존연금 (제21조 제2호)	주피보험자 (주된 보험대상자)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매년 보험계약 해당일에 살아있을 때	연금지급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금(다만, 연금지급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금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을 경우 최저연금적립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 지급 - 정액형 : 10년, 20년, 100세 보증 - 체증형(5%, 10%체증) : 10년, 20년보증
	종피보험자 (확장 보험대상자)	주피보험자(주된 보험대상자)가 연금지급개시이후에 사망하고 종피보험자(확장 보험대상자)가 연금지급개시시점부터 보증지급기간 이후에 매년 보험계약해당일에 살아있을 때	주피보험자(주된 보험대상자)의 보증지급기간 최종년도 연금액의 동일액을 지급

나. 금액보증부 종신연금형

[기준 : 1구좌]

급여명	지급사유	지급액
생존연금 (제21조 제2호)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매년 보험계약해당일에 살아있을 때	연금지급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금(다만, 연금지급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금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을 경우 최저연금적립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연금액 지급 다만, 피보험자(보험대상자) 사망시에는 연금지급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액(다만, 연금지급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금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을 경우 최저연금적립금)과 이미 지급되어진 연금 총액과의 차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며, 이미 지급되어진 연금 총액이 연금지급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금(다만, 연금지급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금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을 경우 최저연금적립금)보다 많은 경우에는 일시금을 지급하지 않음

3. 연금지급형태 변경에 관한 사항 (제8조 제5항)

계약자가 제8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5항에 의해 연금지급형태 변경시 선택한 연금지급형태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연금을 지급합니다.

-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기간보증부 종신연금형, 금액보증부 종신연금형, 상속연금형	연금지급개시나이 계약해당일부터 종신까지
확정연금형, 실적배당형	연금지급개시나이 계약해당일부터 최종 연금 지급일까지

가. 기간보증부 종신연금형

① 개인연금형

[기준 : 1구좌]

급여명	지급사유	지급액
생존연금 (제21조 제2호)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매년 보험계약 해당일에 살아있을 때	연금지급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금(다만, 연금지급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금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을 경우 최저연금적립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 지급 - 정액형 : 10년, 20년, 100세 보증 - 체증형(5%, 10%체증) : 10년, 20년보증

② 부부연금형

[기준 : 1구좌]

급여명	구분	지급사유	지급액
생존연금 (제21조 제2호)	주피보험자 (주된 보험 대상자)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매년 보험계약 해당일에 살아있을 때	연금지급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금(다만, 연금지급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금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을 경우 최저연금적립금)을 기준

		때	으로 계산한 금액 지급 - 정액형 : 10년, 20년, 100세 보증 - 체증형(5%, 10%체증) : 10년, 20년보증
	종피보험자 (확장 보험 대상자)	주피보험자(주된 보험대상자) 가 연금지급개시이후에 사망 하고 종피보험자(확장 보험대 상자)가 연금지급개시시점부 터 보증지급기간 이후에 매 년 보험계약해당일에 살아있 을 때	주피보험자(주된 보험대상자)의 보증지급기간 최종년도 연금액의 동일액을 지급

나. 금액보증부 종신연금형

[기준 : 1구좌]

급여명	지급사유	지급액
생존연금 (제21조 제2호)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피 보험자(보험대상자)가 매년 보험계약해당일에 살아있을 때	연금지급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금(다만, 연금지급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금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을 경우 최저연금 적립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연금액 지급 다만, 피보험자(보험대상자) 사망시에는 연금지급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액(다만, 연금지급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금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을 경우 최저연금적립금)과 이미 지급되 어진 연금 총액과의 차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며, 이미 지급되 어진 연금 총액이 연금지급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금(다만, 연 금지급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금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 을 경우 최저연금적립금)보다 많은 경우에는 일시금을 지급하 지 않음

다. 확정연금형

[기준 : 1구좌]

급여명	지급사유	지급액
연금 (제21조 제3호)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계 약자가 선택한 확정연금지급 기간(5년, 7년, 10년, 15년, 20 년)의 매년 보험계약해당일	연금지급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금(다만, 연금지급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금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을 경우 최저연금 적립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계약자가 선택한 확정연금지급기 간에 따라 계산한 금액 지급

라. 상속연금형

[기준 : 1구좌]

급여명	지급사유	지급액
생존연금 (제21조 제2호)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피 보험자(보험대상자)가 매년 보험계약해당일에 살아있을 때	연금지급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금(다만, 연금지급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금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을 경우 최저연금 적립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연금액을 지급 (다만, 피보험자(보 험대상자) 사망시에는 사망시점의 「연금계약의 적립액」을 지 급)

마. 실적연금형

[기준 : 1구좌]

급여명	지급사유	지급액
연금 (제21조 제3호)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연금 지급기간(5년 이상 계약자가 선택한 연단위 기간)의 매년 보험계약해당일	연금지급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금(다만, 연금지급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금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을 경우 최저연금적립금)을 기준으로 연금지급기간 계약자(연금지급개시 이후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선택한 연금지급횟수에 따라 지급사유 발생일 현재 계약자 보유 좌수를 나누는 방식으로 계산한 연금액을 지급

4. 용어의 설명

1. 「계약자적립금」은 특별계정 투입보험료에서 매월 월공제액(당월분의 위험보험료 및 납입후 유지비), 최저사망적립금 보증비용, 최저연금적립금 보증비용, 특별계정 운용보수 및 특별계정 수탁보수를 차감한 금액을 말합니다. 다만, 중도인출금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점의 계약자적립금에서 중도인출금을 차감하며, 보험료 납입이 완료된 이후의 보장계약의 보험료 및 납입후 유지비는 월계약해당일에 계약자적립금에서 차감합니다.
2.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약관 제4조(용어의 정의) 제6호에서 정한 보험료를 말하며 계약자가 납입보험료를 감액하거나 중도에 계약자적립금을 인출할 경우 제8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4항 및 제50조(계약자적립금의 인출) 제3항에 따라 계산된 보험료를 말합니다.
3. 「연금계약의 적립액」이란 연금지급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금(다만, 연금지급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금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을 경우 최저연금적립금)을 「공시이율」로 부리 적립한 금액에서 생존연금 및 연금 발생분(납입후 유지비 포함)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을 「공시이율」로 부리 적립한 금액으로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정한 바에 따라 계산합니다.
4. 생존연금 및 연금은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계산되므로 공시이율이 변경되면 매년 지급되는 생존연금 및 연금도 변경됩니다.
5.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이후의 공시이율이 연금개시시점의 공시이율과 계속 동일한 경우의 해당년도 연금액은 직전년도 연금액과 동일하나(종신연금형의 체증형 제외),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이후의 공시이율이 변경될 경우에는 직전년도의 연금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6. 종신연금형의 체증형인 경우 체증기간은 10년이며,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이후의 공시이율이 연금개시시점의 공시이율과 계속 동일한 경우의 해당년도 연금액은 직전년도 연금액을 체증률(5%, 10%)로 체증한 금액과 동일합니다. 다만,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이후의 공시이율이 변경될 경우에는 직전년도 연금액을 체증률(5%, 10%)로 체증한 금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7. 종신연금형의 경우 연금지급개시 전에 선택한 보증지급기간[정액형(10년, 20년, 100세), 체증형(10년, 20년)]동안 연금지급을 보증하며, 보증지급기간 안에 사망시에는 보증지급기간까지의 미지급된 생존연금액을 생존연금지급일에 드립니다. (다만, 정액형의 100세 보증은 주피보험자(주된 보험대상자) 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8. 확정연금형의 경우 확정연금지급기간(7년, 10년, 15년, 20년) 안에 사망시에는 확정연금지급기간까지의 미지급된 연금액을 연금지급일에 드립니다.
9. 위의 제7호의 보증지급기간 및 제8호의 확정연금지급기간 안에 사망시는 각각 보증지급기간과 확정연금지급기간 중 남은 기간 동안의 생존연금액 및 연금액을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공시이율로 할인한 일시금으로 선지급할 수 있습니다.
10. 위의 제7호의 보증지급기간 안의 미지급된 생존연금 및 제8호의 확정연금지급기간 동안의 미지급된 연금을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공시이율로 할인한 일시금으로 선지급할 수 있습니다.
11. 실적연금형의 경우 연금지급개시 후 연금지급기간(5년 이상 계약자가 선택한 연단위 기간) 동안에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도 각 연금지급횟수까지의 미지급된 각 연금액을 연금지급해당일에 드립니다. 다만, 잔여 지급 연금을 일시금으로 지급을 원할 경우 사망 당시의 연금지급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12) 연금지급형태 중 실적연금형을 선택할 경우 연금개시후 보험기간에도 연금개시전 보험기간에 운용되는 특별계정(펀드)에서 계속하여 계약자적립금을 운용하여 5년 이상 계약자가 선택한 연단위 기간 동안 계약자의 보유좌수를 나누어 연금으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연금지급액(납입후 유지비 포함) $= (\text{연금지급일 현재 계약자 보유좌수} / \text{잔여연금지급횟수}) \times \text{연금지급일 현재 기준가}$
--

예를 들어 연금지급 개시시점 현재 1억좌를 보유하고, 5년간 매월 단위 지급을 신청한 경우

구분	1회	2회	3회	4회	5회	...
보유좌수	100,000,000	98,333,334	96,666,668	95,000,002	93,333,336	...
잔여연금 지급횟수	60	59	58	57	56	...
1000좌당 기 준가예시	1,100	950	1,050	1,100	1,200	...
연금지급액	1,824,212	1,575,456	1,741,293	1,824,212	1,990,049	...

* 상기 연금액 예시표는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기준가, 보유좌수, 연금지급액을 가정하여 작성된 것으로 실제 연금 지급과는 관계 없습니다.

** 매회 지급되는 연금액은 특별계정 운용실적에 따른 기준가가 적용되므로 특별계정의 운용실적에 따라 매회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상기 표의 연금지급액은 납입후 유지비를 제외하고 계약자에게 지급되는 연금지급액을 예시한 것입니다.

- 13) 실적연금형의 경우 계약자(연금지급개시 이후에는 생존연금을 받는자(보험수익자))가 연금지급을 요청한 날을 연금지급 이체사유 발생일로 하며, 특별계정에서 일반계정으로 이체하여 생존연금을 받는자(보험수익자)에게 연금을 지급합니다.
- 14) 실적연금형의 지급주기는 매년 단위를 원칙으로 하되 1개월 단위, 3개월 단위 또는 6개월 단위로 할 수 있으며, 지급 주기는 연금지급 기간 내에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15) 실적연금형의 경우 계약자(연금지급 개시 이후에는 생존연금을 받는자(보험수익자))는 5년 이상의 범위에서 1년 이상 연단위로 연금지급기간의 연장 또는 단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금지급 개시 이후에 연금지급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때에는 신청일 현재 실적연금형의 연금지급 책임준비금이 120만원 이상이고 연금지급기간 만료일이 1년 이상 남아 있어야 합니다.
- 16) 실적연금형의 경우 연금개시전 보험기간과 동일한 특별계정에서 운용하는 경우, 기준가 산정시 매일 차감되는 최저사망보험금 보증비용 및 최저연금적립금 보증비용은 매년 계약해당일까지 이 보험의 보장계약 예정이율로 일반계정에서 부리한 후 매년 계약해당일에 특별계정으로 이체하여 계약자의 보유좌수를 증액합니다. 다만, 매년 계약 해당일 이전에 보험계약의 해지,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사망 등으로 보험 계약이 더 이상 유효 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급일까지의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실적연금형 최저사망보험금 보증비용 및 최저연금적립금 보증비용 적립금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17) 생존연금 및 연금을 매월, 3개월, 6개월로 나누어 지급할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공시이율로 계산한 이자를 더하여 지급합니다.
- 18)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이후의 『공시이율』은 회사가 정한 이율로 매월 1일 적용합니다. 다만, 공시이율은 보험가입 후 10년 이내에는 연복리 2.5%, 10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복리 2.0%를 최저한도로 적용합니다.
- 19) 계약자는 제8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5항에 의해 연금지급형태를 변경할 때 연금지급형태 중 최대 2개의 연금의 형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20) 2개의 연금 형태를 선택한 경우에 이 보험의 보험기간은 선택한 연금지급형태 중 가장 긴 보험기간으로 합니다.
- 21) 2개의 연금 형태를 선택한 경우에 연금 지급 개시 전까지 연금 지급 개시 시점의 계약자적립액(다만, 연금지급 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액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 보다 적을 경우 최저연금적립금) 분할 비율을 결정해야

합니다. 다만, 한가지 연금 형태에 최소 30% 이상의 계약자적립액을 분할 하여야 합니다.

- 22)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또는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개인연금형은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부부연금형은 주피보험자(주된 보험대상자) 및 종피보험자(확장 보험대상자)가 모두 사망 등으로 인하여 이 약관에서 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계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별표 2)

재해분류표

1. 보장대상이 되는 재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해는 이 보험의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①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S00~Y84)에 해당하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
- ②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규정한 감염병

2.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재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해분류에서 제외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 ①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 요인에 의하여 발병하거나 또는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된 경우
- ② 사고의 원인이 다음과 같은 경우
 - 과로 및 격심한 또는 반복적 운동(X50)
 - 무중력 환경에서의 장시간 체류(X52)
 - 식량부족(X53)
 - 물부족(X54)
 - 상세불명의 결핍(X57)
 - 고의적 자해(X60~X84)
 - “법적 개입” 중 법적 처형(Y35.5)
- ③ “외과적 및 내과적 치료 중 환자의 재난(Y60~Y69)” 중 진료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사고(다만, 처치 당시에는 재난의 언급이 없었으나 환자에게 이상반응이나 후에 합병증을 일으키게 한 외과적 및 기타 내과적 처치(Y83~Y84)는 보장)
- ④ “자연의 힘에 노출(X30~X39)” 중 급격한 액체손실로 인한 탈수
- ⑤ “우발적 익사 및 익수(W56~W74), 기타 호흡과 관련된 불의의 위협(W75~W84), 눈 또는 인체의 개구부를 통하여 들어온 이물질(W44)” 중 질병에 의한 호흡장애 및 삼킴장애
- ⑥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U00 ~U89)에 해당하는 질병

※ () 안은 제6차 개정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10-246호, 2011.1.1시행)상의 분류번호이며, 제7차 개정 이후 상기 재해 이외에 추가로 위 1 및 2의 각 호의 분류번호에 해당하는 재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재해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용어 설명】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2. “제1군감염병”이란 마시는 물 또는 식품을 매개로 발생하고 집단 발생의 우려가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방역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는 다음 각 목의 감염병을 말한다.

- 가. 콜레라
- 나. 장티푸스
- 다. 파라티푸스
- 라. 세균성이질
- 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 바. A형간염

(별표 3)

보험금 지급시의 적립이율 계산

(약관 제47조 제2항 관련)

■ 사망보험금(약관 제21조 제1호)

구분	내용
적립기간	지급 기일의 다음날부터 보험금 지급일까지의 기간
적립이율	보험계약대출이율

■ 생존연금 및 연금(약관 제21조 제2호 및 제3호)

- 회사가 보험금의 지급시기 7일 이전에 지급할 사유와 금액을 알리지 아니한 경우

구분	내용
적립기간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보험금 청구일까지의 기간
적립이율	예정이율

구분	내용
적립기간	보험금 청구일의 다음날부터 지급 기일까지의 기간
적립이율	예정이율 + 1%

구분	내용
적립기간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해지한금 지급일까지의 기간
적립이율	보험계약대출이율

- 회사가 보험금의 지급시기 7일 이전에 지급할 사유와 금액을 알린 경우

구분	내용
적립기간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보험기간 만기일(다만, 이 계약이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된 날)까지의 기간
적립이율	예정이율

구분	내용	
적립기간	보험기간 만기일(다만, 이 계약이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된 날)의 다음날부터 보험금 청구일까지의 기간	
적립이율	1년 이내 예정이율의 50%	1년 초과기간 1%

구분	내용
적립기간	보험금 청구일의 다음날부터 지급 기일까지의 기간
적립이율	예정이율 + 1%

구분	내용
적립기간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보험금 지급일까지의 기간
적립이율	보험계약 대출이율

- 해지환급금(약관 제25조 제1항 내지 제3항)
 - 해지환급금(약관 제25조 제1항 또는 제3항)

구분	내용	
적립기간	해지환급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해지환급금 청구일까지의 기간	
적립이율	1년 이내	1년 초과기간
	예정이율의 50%	1%

구분	내용
적립기간	해지환급금 청구일의 다음날부터 지급 기일까지의 기간
적립이율	예정이율 + 1%

구분	내용
적립기간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해지환급금 지급일까지의 기간
적립이율	보험계약 대출이율

- 해지환급금(약관 제25조 제2항)

구분	내용
적립기간	해지환급금 청구일 + 제2영업일의 다음날부터 지급 기일까지의 기간
적립이율	예정이율 + 1%

구분	내용
적립기간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해지환급금 지급일까지의 기간
적립이율	보험계약 대출이율

(주)

1. 상기 예정이율은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에는 「보장계약의 예정이율」,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에는 「공시이율」을 말합니다. 다만,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실적연금형의 경우 「보장계약의 예정이율」을 말합니다.
2. 지급이자의 계산은 연단위 복리로 계산하며, 약관 제27조(소멸시효)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에는 더 이상 지급이자를 적립하지 않습니다.
3. 계약자 등의 책임 있는 사유로 보험금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지급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표준하체인수특약 약관

표준하체인수특약 약관

제 1 조 【특약의 체결】

제 2 조 【특약의 내용】

제 3 조 【특약의 부가조건】

제 4 조 【특약의 보험기간 및 보험료의 납입】

제 5 조 【특약내용의 변경】

제 6 조 【주계약 약관의 준용】

표준하체인수특약 약관

제 1 조 【특약의 체결】

- ① 이 특약은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진단결과 보험회사가 정한 표준체보함에 가입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 보험계약자의 청약과 보험회사의 승낙으로 주된 보험계약에 부가하여 이루어집니다. 이 특약에서 “보험계약”이라 함은 주된 보험계약과 특약이 부가된 경우에는 특약을 포함한 것을 말하며, “주된 보험계약”은 “주계약”이라 합니다.
- ② 특약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의 보장개시일과 동일합니다.

제 2 조 【특약의 내용】

이 특약은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위험도가 높아 계약이 불가능한 경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입할 수 있도록 하여 보험기간 중 위험에 대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합니다.

제 3 조 【특약의 부가조건】

- ① 특약에 의하여 부가하는 계약조건은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건강상태, 위험의 종류 및 정도에 따라 다음 중 한가지의 방법으로 부가합니다.
 1. 할증보험료법

할증위험률(割増率)에 의한 보험료와 표준체(標準體) 보험료와의 차액을 특약보험료라 하며 계약체결시 위험의 정도에 따라 표준체 보험료에 회사에서 정한 특약보험료를 더하여 납입보험료로 합니다. 이러한 경우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보험계약에 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할증위험률】

건강상태가 회사가 정한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초과위험에 대해 적용되는 위험률로 일반적으로 표준체 대비 높은 보험료가 적용됩니다.

2. 보험금감액법

계약일로부터 회사가 정하는 삭감기간(削減期間)내에 보험계약의 규정에 정하는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계약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시에 정한 삭감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경과기간	기준	삭감 기간				
		1년	2년	3년	4년	5년
1년미만	보험계약에 정한 지급보험금	50%	30%	25%	20%	15%
1년이상 2년미만			60%	50%	40%	30%
2년이상 3년미만				75%	60%	45%
3년이상 4년미만					80%	60%
4년이상 5년미만						80%

그러나, 그 보험사고의 발생원인이 재해로 인하여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망(보험기간 중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를 포함하며,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등 민법 제 27 조(실종의 선고) 제 2항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정부기관이 인정하여 관공서의 사망보고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경우에는 그러한 사고가 발생한 때를 사망한 것으로 인정합니다)하였을 경우에는 삭감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보험계약의 규정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3. 나이가산법

할증위험률에 따른 보험료가 표준체 보험료와 가장 가까운 나이간의 차이를 연증수(年增率)라 합니다. 즉 어떤 결함을 가진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위험지수(危險指數)가 실제 n세 높은 나이의 표준체와 같은 위험률을 나타낸다고 인정할 때 n년증이라 칭하고 n세 높은 나이의 표준체 보험료를 받아들이는 방법입니다.

4. 나이가산법과 보험금감액법을 병용(併用)할 수 있습니다.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에 부가된 조건을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조문 내용】

민법 제 27 조(실종의 선고)

- ① 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하여야 한다.
- ② 전지에 임한 자, 침몰한 선박중에 있던 자, 추락한 항공기중에 있던 자 기타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을 당한 자의 생사가 전쟁종지후 또는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기타 위난이 종료한 후 1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도 제 1항과 같다. <개정 1984.4.10>

제 4 조 【특약의 보험기간 및 보험료의 납입】

- ① 이 특약의 보험기간은 주계약의 보험기간과 동일합니다.
- ② 이 특약의 보험료는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에 주계약의 보험료와 함께 납입하여야 하며, 주계약의 보험료를 선납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 ③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도 면제됩니다.

제 5 조 【특약내용의 변경】

이 특약은 주계약의 약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내용은 변경할 수 없습니다.

1. 보험기간 또는 보험료 납입기간의 변경
2. 감액완납 또는 연장보험으로의 변경

제 6 조 【주계약 약관의 준용】

이 특약에 따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주계약 약관에 따릅니다.

지정대리청구서비스특약 약관

지정대리청구서비스특약 약관

제 1 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53
제 1 조 【적용대상】	
제 2 조 【특약의 체결 및 소멸】	
제 2 관 지정대리청구인의 지정	53
제 3 조 【지정대리청구인의 지정】	
제 4 조 【지정대리청구인의 변경 지정】	
제 3 관 보험금 지급 등의 절차	53
제 5 조 【보험금 지급 등의 절차】	
제 6 조 【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	
제 4 관 기타사항	54
제 7 조 【준용규정】	

지정대리청구서비스 특약

제 1 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제1조 [적용대상]

이 특별약관(이하 “특약”이라 합니다)은 보험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및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모두 동일한 주계약 및 특약에 적용됩니다.

제2조 [특약의 체결 및 소멸]

- ① 이 특약은 보험계약자의 청약(請約)과 보험회사의 승낙(承諾)으로 부가되어집니다. (이하 보험계약자는 “계약자”, 보험회사는 “회사” 라 합니다)
- ② 제 1 조(적용대상)의 보험계약이 해지(解止) 또는 기타 사유에 의하여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제 2 관 지정대리청구인의 지정

제3조 [지정대리청구인의 지정]

- ① 보험계약자는 주계약 및 특약에서 정한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계약체결시 또는 계약체결 이후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 1인을 보험금의 대리청구인(이하 “지정대리청구인”이라 합니다)으로 지정(제 4 조(지정대리청구인의 변경 지정)에 의한 변경 지정 포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정대리청구인은 보험금 청구시에도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1. 피보험자(보험대상자)와 동거하거나 피보험자(보험대상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가족관계등록부상 또는 주민등록상의 배우자
 2. 피보험자(보험대상자)와 동거하거나 피보험자(보험대상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3촌 이내의 친족
- ②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지정대리청구인이 지정된 이후에 제 1 조(적용대상)의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이미 지정된 지정대리청구인의 자격은 자동적으로 상실된 것으로 봅니다.

제4조 [지정대리청구인의 변경 지정]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지정대리청구인을 변경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변경 지정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1. 지정대리청구인 변경신청서(회사양식)
2.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
3. 지정대리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등록부(기본증명서 등)
4.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포함)

제 3 관 보험금 지급 등의 절차

제5조 [보험금 지급 등의 절차]

- ① 지정대리청구인은 제 6 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에서 정한 구비서류 및 제 1 조(적용대상)의 보험수익자

(보험금을 받는 자)가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고 회사의 승낙을 얻어 제 1 조(적용대상)의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대리인으로서 보험금(사망보험금 제외)을 청구하고 수령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가 보험금을 지정대리청구인에게 지급한 경우에는 그 이후 보험금 청구를 받더라도 회사는 이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6조 【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

지정대리청구인은 회사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
3.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4.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인감증명서
5.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및 지정대리청구인의 가족관계등록부(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6. 기타 지정대리청구인이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제 4 관 기타사항

제7조 【준용규정】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주계약 약관 및 해당 특별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별지)

약관 내 인용 조문

아래 내용은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참고적으로 제공되는 내용으로서, 후후 법령 내용은 개정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제처(www.moleg.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1-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1-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 개인정보보호법
- 3-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3-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1-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제 10465 호, 시행 2011.9.30]

제 16 조(수집·조사 및 처리의 제한)

- ① 신용정보회사등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수집·조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국가의 안보 및 기밀에 관한 정보
 - 2. 기업의 영업비밀 또는 독창적인 연구개발 정보
 - 3. 개인의 정치적 사상, 종교적 신념, 그 밖에 신용정보와 관계없는 사생활에 관한 정보
 - 4. 확실하지 아니한 개인신용정보
 - 5. 다른 법률에 따라 수집이 금지된 정보
 -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 ② 신용정보회사등이 개인의 질병에 관한 정보를 수집·조사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려면 미리 제 32 조제 1 항에 따른 해당 개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으로만 그 정보를 이용하여야 한다.

제 32 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

- ① 신용정보제공이용자가 대출, 보증에 관한 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개인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미리 동의를 받아야 한다.
 - 1. 서면
 - 2. 「전자서명법」 제 2 조제 3 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전자거래기본법」 제 2 조제 1 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말한다)
 - 3.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내용 및 제공 목적 등을 고려하여 정보 제공 동意的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는 유

무선 통신으로 개인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식

- 4. 유무선 통신으로 동의 내용을 해당 개인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는 방법. 이 경우 본인 여부 및 동의 내용, 그에 대한 해당 개인의 답변을 음성녹음하는 등 증거자료를 확보·유지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사후 고지절차를 거친다.
-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
- ② 신용조회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개인으로부터 제 1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때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는 해당 개인에게 개인신용정보의 조회 시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 ③ 신용조회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이 개인신용정보를 제 2 항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가 제 2 항에 따른 동의를 받았는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하여야 한다.
- ④ 신용정보회사등이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 1 항부터 제 3 항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1. 신용정보회사가 다른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과 서로 집중관리·활용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경우
 - 2. 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경우로서 제 17 조제 2 항에 따라 신용정보의 처리를 위탁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경우
 - 3. 영업양도·분할·합병 등의 이유로 권리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전하면서 그와 관련된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4. 채권추심(추심채권을 추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인가허가의 목적, 기업의 신용도 판단, 유가증권의 양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 5.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
 - 6. 범죄 때문에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심각한 위험 발생이 예상되는 등 긴급한 상황에서 제 5 호에 따른 법관의 영장을 발부받은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로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요구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 이 경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은 검사는 지체 없이 법관에게 영장을 청구하여야 하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영장을 청구하여야 하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은 때부터 36 시간 이내에 영장을 발부받지 못하면 지체 없이 제공받은 개인신용정보를 폐기하여야 한다.
 - 7.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질문·검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관할 관서의 장이 서면으로 요구하거나 조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출의무가 있는 과세자료의 제공을 요구함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

8. 국제협약 등에 따라 외국의 금융감독기구에 금융회사가 가지고 있는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9.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
- ⑤ 제 4 항 각 호에 따라 개인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려는 자 또는 제공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사실 및 이유 등을 해당 신용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등 이와 유사한 방법을 통하여 공시할 수 있다.
- ⑥ 제 4 항제 3 호에 따라 개인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는 신용정보제공이용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공하는 신용정보의 범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⑦ 신용정보회사등이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신원(身元)과 이용 목적을 확인하여야 한다.
- ⑧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한 신용정보제공이용자는 제 1 항에 따라 미리 동의를 받았는지 여부 등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

제33조(개인신용정보의 이용)

개인신용정보는 해당 신용정보주체가 신청한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고용관계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설정 및 유지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개인이 제32조제1항 각 호의 방식으로 이 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정한 목적 외의 다른 목적에의 이용에 동의한 경우
2. 개인이 직접 제공한 개인신용정보(그 개인과의 상거래에서 생긴 신용정보를 포함한다)를 제공받은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상품과 서비스를 소개하거나 그 구매를 권유할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제32조제4항 각 호의 경우
4. 그 밖에 제 1 호부터 제 3 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1-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 23535 호, 시행 2012.1.26]

제28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

- ① 법 제32조제1항에서 "대출, 보증에 관한 정보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개인신용정보"란 제2조제2항의 개인에 관한 신용정보를 말한다. 다만, 신용정보집중기관 또는 신용조회 회사에 제공하려는 다음 각 호의 신용정보는 제외한다.

1. 제2조제1항제3호의 신용정보
2. 제2조제1항제5호 각 목(마목 및 사목은 제외한다)에 따른 신용정보. 다만, 같은 호 라목의 경우에는 체납 관련 정보, 자목의 경우에는 신용회복정보만 해당한다.
- ② 신용정보제공·이용자는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해당 개인으로부터 동의를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미리 알려야 한다. 다만, 동의 방식의 특성상 동의 내용을 전부 표시하거나 알리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나 사업장 전화번호 등 동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고 동의를 받을 수 있다.
 1.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
 2.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3. 제공하는 개인신용정보의 내용
 4.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신용조회회사 및 신용정보 집중기관은 제외한다)의 정보 보유 기간 및 이용 기간
- ③ 법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개인비밀번호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밀번호로 한다.
 1. 해당 개인이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2호의2에 따른 신용카드업자에게 등록된 비밀번호
 2. 개인신용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신용정보제공·이용자로부터 해당 개인 명의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받은 비밀번호
 3.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개인비밀번호
- ④ 신용정보제공·이용자는 법 제32조제1항제4호에 따라 무선 통신을 통하여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서면,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고지하여야 한다.
- ⑤ 법 제3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신용정보"란 제2조제2항의 개인에 관한 신용정보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신용정보는 제외한다.
 1. 제2조제1항제3호의 신용정보
 2. 제1항제2호에 따른 정보. 다만, 제2조제1항제5호라목에 따른 체납 관련 정보 중 국민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 ⑥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신용조회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개인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동의방식의 특성상 동의 내용을 전부 표시하거나 알리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나 사업장 전화번호 등 동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고 동의를 받을 수 있다.

1.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자
 2.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3. 제공받는 개인신용정보의 항목
 4.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것에 대한 동의의 효력기간
- ⑦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신용조회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은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가 해당 개인으로부터 동의를 받았는지를 서면, 전자적 기록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방식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 ⑧ 법 제32조제4항제4호에서 "채권추심(추심채권을 추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인가·허가의 목적, 기업의 신용도 판단, 유가증권의 양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이란 다음 각 호의 목적을 말한다.
1. 채권추심을 의뢰한 채권자가 채권추심의 대상이 되는 자의 개인신용정보를 채권추심회사에 제공하거나 채권추심회사로부터 제공받기 위한 목적
 2. 채권자 또는 채권추심회사가 변제기일까지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 또는 채권추심의 대상이 되는 자에 대한 개인신용정보를 신용조회회사로부터 제공받기 위한 목적
 3. 행정기관이 인가·허가 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신용조회회사로부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기 위한 목적
 4. 해당 기업과의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그 기업의 대표자 및 제2조제1항제3호의 각 목에 해당하는 자의 개인신용정보를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신용조회회사로부터 제공받기 위한 목적
 5. 제21조제2항에 따른 금융기관이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또는 어음·수표 소지인이 어음·수표의 발행인, 인수인, 배서인 및 보증인의 변제 의사 및 변제자력을 확인하기 위하여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신용조회회사로부터 어음·수표의 발행인, 인수인, 배서인 및 보증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기 위한 목적
- ⑨ 법 제32조제5항 본문에 따라 신용정보주체에게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사실 및 이유 등을 알리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이 경우 그 알리는 방법은 서면, 전화(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포함한다), 전자우편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른다.
1. 법 제32조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8호에 따른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정보를 제공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30일부터 60일까지의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 이내에 알릴 것
 2. 법 제32조제4항제4호에 따른 정보를 제공받은 경우: 해당 정보를 제공받은 날을 기준으로 하여 30일부터 60일까지의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

이내에 알릴 것. 다만,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채권추심회사가 채권수입 사실을 통보하는 경우에는 그 수입사실을 통보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알려야 한다.

3. 법 제32조제4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9호에 따른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정보를 제공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60일부터 180일까지의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 이내에 알릴 것
- ⑩ 법 제32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그 고시방법은 인터넷 홈페이지나 게시판에의 게재 또는 사무실·점포 등에서의 비치·열람 등의 방법에 따른다.
 1. 신용정보회사등의 고의 또는 과실 없이 신용정보주체의 주소 또는 거소 등을 알 수 없는 경우
 2. 신용정보의 특성, 제공 대상자, 제공 경위 및 제공 목적 등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금융위원회가 인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법 제32조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7호에 따른 정보만 해당한다)
- ⑪ 법 제32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 ⑫ 법 제32조제6항에서 "제공하는 신용정보의 범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제공하는 개인신용정보의 범위, 제공받는 자의 신용정보 관리·보호 체계를 말한다.

2. 개인정보보호법

[법률 제 10465 호, 시행 2011.9.30]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5.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공유)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제15조제1항제2호·제3호 및 제5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③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국외의 제3자에게 제공할 때에는 제2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 법을 위반하는 내용으로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

-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이 법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하여 정보주체(제5항에 따른 법정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각각의 동의 사항을 구분하여 정보주체가 이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각각 동의를 받아야 한다.
-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5조제1항제1호, 제17조제1항제1호, 제23조제1호 및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정보주체와의 계약 체결 등을 위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

는 개인정보와 정보주체의 동의가 필요한 개인정보를 구분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라는 입증책임은 개인정보처리자가 부담한다.

-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에게 재화나 서비스를 홍보하거나 판매를 권유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를 받으려는 때에는 정보주체가 이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가 제2항에 따라 선택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사항을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및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정보주체에게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⑤ 개인정보처리자는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른 동의를 받아야 할 때에는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해당 아동으로부터 직접 수집할 수 있다.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는 세부적인 방법 및 제5항에 따른 최소한의 정보의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개인정보의 수집·매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개인정보처리자는 사상·신념,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이하 “민감정보”라 한다)를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정보주체에게 제15조제2항 각 호 또는 제17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알리고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령에서 민감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령에 따라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하여 부여된 식별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이하 “고유식별정보”라 한다)를 처리할 수 없다.
 1. 정보주체에게 제15조제2항 각 호 또는 제17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알리고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으로 가입할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도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여야 한다.

- ③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 각 호에 따라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고유식별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방법의 제공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의 정비, 계획의 수립, 필요한 시설 및 시스템의 구축 등 제반 조치를 마련할 수 있다.

3-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법률 제 11040 호, 시행 2011.11.5]

제88조(자산운용보고서의 교부)

- ① 집합투자업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3개월마다 1회 이상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투자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②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른 자산운용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이하 이 조에서 "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자산·부채 및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
 - 가. 회계기간의 개시일부터 3개월이 종료되는 날
 - 나. 회계기간의 말일
 - 다. 계약기간의 종료일 또는 존속기간의 만료일
 - 라. 해지일 또는 해산일
 - 2. 직전의 기준일(직전의 기준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최초 설정일 또는 성립일을 말한다)부터 해당 기준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해당 운용기간"이라 한다) 중 운용경과의 개요 및 해당 운용기간 중의 손익 사항
 - 3. 기준일 현재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의 종류별 평가액과 집합투자재산 총액에 대한 각각의 비율
 - 4. 해당 운용기간 중 매매한 주식의 총수, 매매금액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회전을
 -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③ 제1항에 따른 자산운용보고서의 교부시기 및 방법, 비용부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8조(신탁계약의 체결 등)

- ① 투자신탁을 설정하고자 하는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신탁계약서에 의하여 신탁업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1.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상호
- 2. 신탁원본의 가액 및 수익증권의 총좌수에 관한 사항
- 3.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4. 이익분배 및 환매에 관한 사항
- 5.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 그 밖의 수수료의 계산방법과 지급시기·방법에 관한 사항. 다만, 집합투자업자가 기준가격 산정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수수료는 해당 투자신탁재산에서 부담한다는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 6. 수익자총회에 관한 사항
- 7. 공시 및 보고서에 관한 사항
- 8. 그 밖에 수익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탁계약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미리 제190조제5항 본문에 따른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 1.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 2. 신탁업자의 변경(합병·분할·분할합병,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변경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 3. 신탁계약기간의 변경
 - 4. 그 밖에 수익자의 이익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③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제2항에 따라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하며, 제2항 후단에 따라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에는 공시 외에 이를 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④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라 투자신탁을 설정하는 경우(그 투자신탁을 추가로 설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신탁업자에게 해당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원본 전액을 금전으로 납입하여야 한다.

3-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 23488 호, 시행 2012.1.6]

제93조(수시공시의 방법 등)

- ① 법 제89조제1항제1호에 따라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가 공시하여야 하는 투자운용인력의 운용경력은 투자운용인력을 변경한 날부터 최근 3년 이내의 운용경력으로 한다.
- ②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실자산"이란 발행인의 부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 다른 회생절차개시의 신청 등의 사유로 인하여 금융위원회가 부실자산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자산을 말한다.
- ③ 법 제89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투자설명서의 변경.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법 및 이 영의 개정 또는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투자설명서를 변경하는 경우
 - 나. 집합투자규약의 변경에 따라 투자설명서를 변경하는 경우
 - 다. 투자설명서의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2. 집합투자업자의 합병, 분할, 분할합병 또는 영업의 양도·양수
3. 집합투자업자 또는 일반사무관리회사가 기준가격을 잘못 산정하여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제262조제1항 후단에 따라 공고·게시하는 경우에 한한다)
4.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집합투자기구(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로서 설정 및 설립 이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법 제192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
5.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및 설립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법 제192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
6. 그 밖에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시와 관련하여 그 서식과 작성방법, 기재사항 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265조(회계감사인의 선임 등)

- ① 법 제240조제4항에 따라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투자회사는 제외한다)이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감사인을 선임하거나 교체하려는 경우에는 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의 감사의 동의(감사위원회가 설치된 경우에는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말한다)를 받아야 하며, 투자회사가 회계감사인을 선임하거나 교체하려는 경우에는 감독이사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② 집합투자재산에 대한 회계감사기준은 금융위원회가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여 고시한다.

- ③ 집합투자재산에 대한 회계감사와 관련하여 회계감사인의 권한은 법 및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6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④ 회계감사인인 집합투자재산에 대한 회계감사를 마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회계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에게 이를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1. 집합투자재산의 대차대조표
 2. 집합투자재산의 손익계산서
 3. 집합투자재산의 기준가격계산서
 4. 집합투자업자 및 그 이해관계인(법 제84조제1항에 따른 이해관계인을 말한다)과의 거래내역
- ⑤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은 회계감사인으로부터 회계감사보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협회, 그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및 그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에게 이를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 ⑥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해당 투자자가 회계감사보고서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⑦ 회계감사에 따른 비용은 그 회계감사의 대상인 집합투자기구가 부담한다.